

A Study on the reasonable management of various committees in Goyang City

# 고양시 각종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 방안 연구

전성훈  
석호원

A Study on the reasonable management of various committees in Goyang City

## 고양시 각종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 방안 연구

### 연구 책임자

전성훈(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실장)

석호원(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공동 연구자

이보라(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원)

민정선(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원)

발행일 2022년 11월 30일

저자 전성훈, 석호원

발행인 정원호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주소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전화 031-8073-8343

홈페이지 [www.goyang.re.kr](http://www.goyang.re.kr)

S N S <https://www.facebook.com/goyangre/>

I S B N 979-11-91726-88-6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고양시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고양시서체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목 차

요약 .....	i
<b>제1장 서론 .....</b>	<b>1</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	6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9
<b>제2장 이론적 배경 .....</b>	<b>11</b>
제1절 위원회 제도의 개념과 특징 .....	13
제2절 위원회의 유형과 기능 .....	16
제3절 각종 위원회의 법제 분석 .....	21
<b>제3장 고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b>	<b>27</b>
제1절 정부의 위원회 현황 분석 .....	29
제2절 고양시 위원회의 현황 분석 .....	39
제3절 고양시 위원회의 운영 실태 분석 .....	52
제4절 소결 .....	68
<b>제4장 고양시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설문 분석 .....</b>	<b>69</b>
제1절 조사 설계 .....	71
제2절 조사 내용의 구성 .....	73

제3절 설문 분석 결과 .....	75
제4절 소결 .....	87
<b>제5장 결론 .....</b>	<b>89</b>
제1절 위원회 정비 판단 분석 체계 .....	91
제2절 판단 분석 결과 .....	92
제3절 정책 제언 .....	103
<b>참고 문헌 .....</b>	<b>105</b>
<b>부록 .....</b>	<b>107</b>
<b>Abstract .....</b>	<b>113</b>

## 표 목차

[표 1-1] 지방 자치 단체 위원회 관련 유사 연구 .....	7
[표 1-2] 연구 방법의 주요 내용 .....	9
[표 2-1] 중앙 정부의 위원회 관련 법적 근거 .....	22
[표 2-2] 지방 자치 단체의 위원회 관련 법적 근거 .....	24
[표 2-3] 고양시의 위원회 관련 법적 근거 .....	26
[표 3-1] 중앙 정부의 연도별 행정 기관 위원회 증감 현황(2021년 6월 기준) .....	29
[표 3-2] 중앙 정부 위원회의 설치 근거별 현황(2021년 6월 기준) .....	30
[표 3-3] 중앙 정부 위원회의 연도별 평균 회의 개최 실적 .....	31
[표 3-4] 중앙 정부 위원회의 회의 개최 현황(2020.07~2021.06.) .....	31
[표 3-5] 중앙 정부의 연도별 회의 미개최 위원회 현황 .....	32
[표 3-6] 중앙 정부의 연도별 위원회 정비 실적 .....	33
[표 3-7] 2022년 행정 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주요 요건 .....	34
[표 3-8] 광역 자치 단체의 연도별 위원회 현황 .....	35
[표 3-9] 광역 자치 단체별 관할 기초 자치 단체의 연도별 위원회 현황 .....	36
[표 3-10] 경기도 관할 기초 자치 단체의 연도별 위원회 현황 .....	37
[표 3-11] 특례시의 연도별 위원회 현황 .....	38
[표 3-12] 고양시의 위원회의 연도별 증감 현황 .....	39
[표 3-13] 고양시 위원회의 설치 근거별 현황 .....	39
[표 3-14] 고양시 위원회의 운영 특성 현황 .....	40
[표 3-15] 고양시 위원회의 부서별 설치 현황 .....	40
[표 3-16] 고양시의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 .....	43
[표 3-17] 고양시 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내용 .....	53
[표 3-18] 고양시 위원회의 분야별 운영 현황 .....	55
[표 3-19] 고양시 위원회의 위원 정원 현황 .....	56

[표 3-20] 고양시 위원회의 위원 현원 현황	57
[표 3-21] 고양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현황	57
[표 3-22] 고양시 위촉직 위원 중 의원 현황	58
[표 3-23] 고양시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 현황	60
[표 3-24] 고양시 위촉직 위원 중 민간 현황	62
[표 3-25] 고양시 위원회의 성별 균형 위촉 규정 현황	62
[표 3-26] 고양시 위원회의 민간 위원 성격 현황	63
[표 3-27] 고양시 위원회의 위원 임기 현황	63
[표 3-28] 고양시 위원회의 위원 연임 규정 현황	64
[표 3-29] 고양시 위원회의 회의 개최 기준	64
[표 3-30] 고양시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2020~2021)	65
[표 3-31] 고양시 위원회 운영 예산 현황(2020~2021)	66
[표 4-1] 설문 조사 체계	72
[표 4-2] 설문 조사 주요 내용	73
[표 4-3] 인구 통계학적 분석 결과	75
[표 4-4] 전문성 확보의 도움 정도	77
[표 4-5] 고양시민의 의견 수렴 도움 정도	77
[표 4-6] 현행 고양시 각종 위원회 운영 목적	78
[표 4-7] 법제상 각종 위원회 정비 의무 인식	78
[표 4-8] 고양시의 법제상 정비 의무 이행 필요성	79
[표 4-9] 현행 고양시 각종 위원회 총량의 적정성	79
[표 4-10] 필요성과 효용성이 낮은 위원회 존재	80
[표 4-11] 폐지가 필요한 위원회 존재	80
[표 4-12] 통합 운영이 필요한 위원회 존재	81
[표 4-13] 운영 방법의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 존재	81
[표 4-14] 담당 위원회의 정비 필요성	82

[표 4-15] 담당 위원회의 구체적인 정비 대안 .....	82
[표 4-16] 법제상 중복 설치 배제 및 통합 운영 인식 .....	83
[표 4-17] 담당 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 존재 인식 .....	83
[표 4-18] 담당 위원회와 타 위원회의 통합 운영 필요성 .....	84
[표 4-19] 담당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 .....	84
[표 4-20] 고양시의 위원회 총량제 도입 필요성 .....	85
[표 4-21] 고양시의 정비 대상 위원회 선정 기준(중복 응답) .....	85
[표 4-22] 각종 위원회의 민간 위원 관리 DB 필요성 .....	86
[표 5-1] 자치 법규 설치 근거 위원회의 정비 대상 선정 기준 적용 결과 .....	93
[표 5-2] 정비 대상 선정 위원회 현황 .....	97
[표 5-3] 정비 대상 위원회의 판단 분석 결과 .....	99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목적 .....	5
[그림 1-2] 연구의 체계 .....	10
[그림 2-1] 최적 다수결 인원수 .....	18
[그림 3-1] 고양시 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체계 .....	52
[그림 3-2] 고양시 각종 위원회 실태 조사표 .....	54
[그림 5-1] 고양시의 각종 위원회 정비 판단 분석 체계 .....	91



## 요 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연구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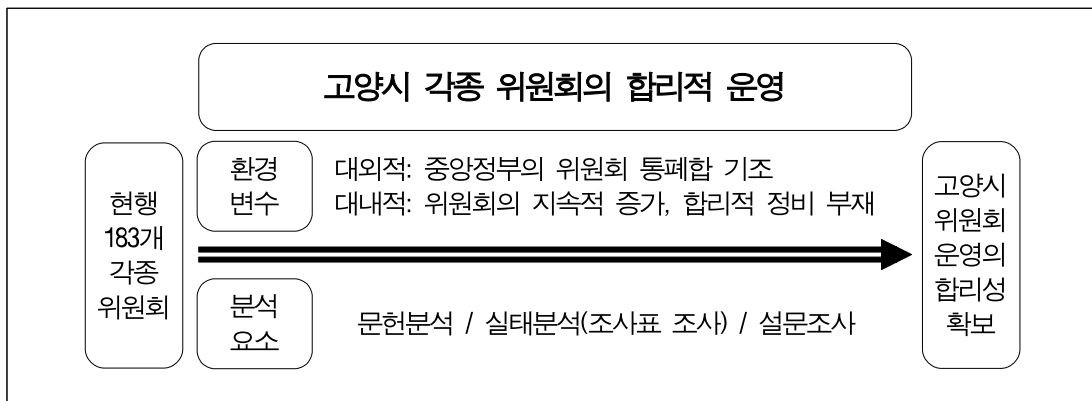
-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문성 확보와 시민의 참여 확대
  -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문기관(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을 활용하는 가장 큰 사유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음
  - 하나는 현대 행정이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면서 높은 분석 능력과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질적인 정책 대상자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수용성과 정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임
  - 특히, 시민과의 밀접한 현장행정과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문성 확보도 중요하나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정보공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목적 또한 그 중요도가 낮지 않음
  - 그러나 위와 같은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위원회가 전문가 위주로 위촉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가 저조하고, 합의제의 성격에 따라 의사결정의 지연과 비용이 소요되며, 책임 분산에 따른 책임전가 현상이 발생되고, 유사·중복적인 위원회의 남설, 형식적인 운영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용인시와 고양시가 경기도 내 가장 많은 위원회 설치·운영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8월 현재 경기도 내 31개 기초자치단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총 2,885개이고, 위촉된 위원 수는 31,170명임
  - 더불어 2021년 현재 고양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총 151개(위

원 수 1,726명)이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용인시(155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위원회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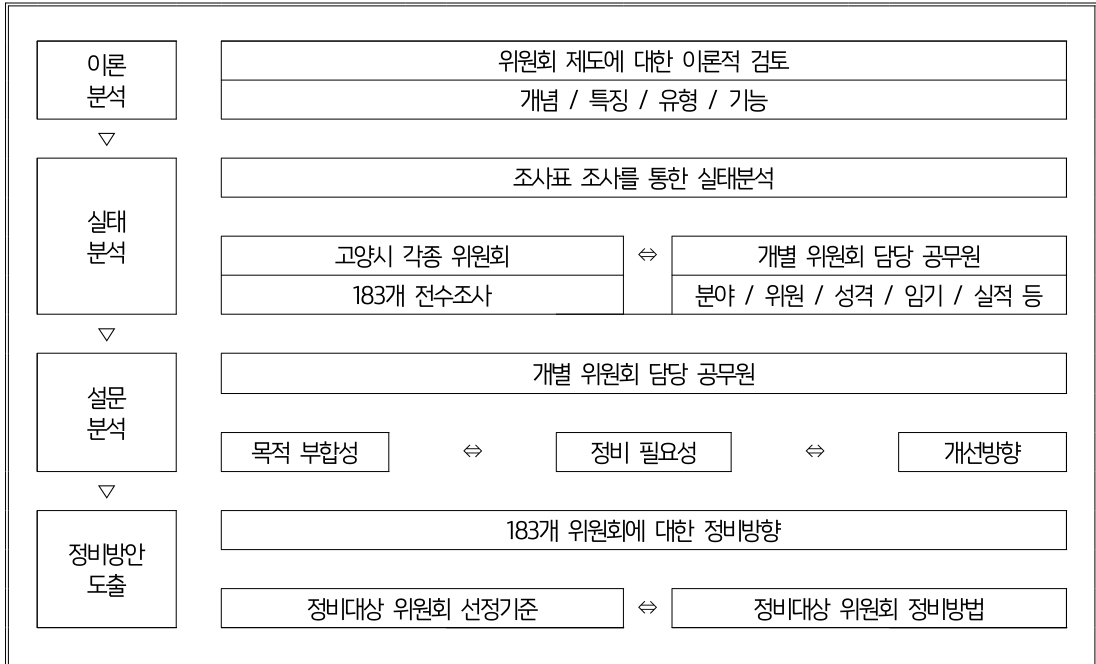
○ 합리적인 운영방안과 제도적인 개선대안 필요

- 고양시의 각종 위원회는 전문성에 기반한 정책 결정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운용되고 있으나, 언급한 바와 같이 고양시 또한 양적·질적인 부분에서 공통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특히, 유사규모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고양시의 위원회가 행정사무 대비 양적으로 과다하며, 위원들 또한 내·외부 인적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중복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인해 이해충돌과 같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음
- 따라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전문성의 확보와 원활한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명료한 정비기준의 설정, 이를 통한 위원회의 구조조정 등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2. 연구의 체계



## 3. 정책 제언

### □ 제도적 측면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구속력 강화 필요
  - 총괄부서의 역할을 선언적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매년 협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동 조항의 3항을 개정하여 동 조례 제25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평가를 받도록 강제해야 함
- 총괄부서의 위원회 관리운영계획 및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개정
  - 동 조례 제23조에는 총괄부서로 하여금 고양시에 설치된 모든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과 운영 활성화, 전문인력 관리운영 등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평가 또한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근거하여 매년 이와 같은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바, 이에 대한 규정 신설이 요구됨
- 동 조례 제25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활성화 및 명백한 역할 부여
  -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임의가 아니라 강행 설치로, 자문위원회의 성격에서도 기존의 검토 외에 심의·의결·평가를 포함토록 개정될 필요가 있음
  - 본 위원회의 강행 설치에 따라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규정의 신설과 위원의 구성 다양화 또한 반영되어야 하며, 해당 자문위원회의 심의·의결·평가·검토 보고서는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고양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구속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 운영적 측면

- 고양시 각종 위원회 총괄부서의 변경 필요
  - 현행 총괄부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는 기획 및 조정부서가 아닌, 사업부서로 고양시 본청을 비롯한 모든 행정기관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역할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전문성 제공과 시민의 의견반영임을 고려하면, 특정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부서보다는 총괄적 측면에서 고양시 전체의 정책을 기획·조정하는 부서가 위원회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위원회 지속적 증가 방지를 위한 내부적 총량 설정 필요
  - 현재 고양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상당히 많은 수준이며, 이로 인해 총괄부서의 관리 부진과 유사·중복 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정력 낭비, 민간위원 확보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

- 따라서 고양시의 현행 행정수요 및 행정역량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가능한 위원회 총량을 총괄부서 차원에서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민간위원에 대한 정보를 총괄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 필요
  - ‘(가칭)고양인재풀’ 또는 ‘(가칭)고양인재DB’를 구축하고 시스템화하여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위원을 배치하고, 위원회와 위원의 특성에 따라 이해충돌 및 제척(除斥) 방지, 신설 위원회의 적시 구성, 임기 종료 등에 따른 공석에 위원 공급, 특정 위원의 다수 위원회 활동 관리 등을 통한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제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중앙 정부를 비롯한 지방 자치 단체에서 자문 기관(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을 활용하는 가장 큰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현대 행정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높은 분석 능력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실질적인 정책 대상자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수용성과 정부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특히, 시민과 밀접한 현장 행정과 종합 행정을 수행하는 지방 자치 단체는, 전문성 확보도 중요하나 시민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목적 또한 중요도가 낮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위원회가 전문가 위주로 위축되어 지역 주민의 참여가 저조하고, 합의제의 성격에 따라 의사 결정이 지연되고 비용이 소멸하며, 책임 분산에 따른 책임 전가 현상이 발생하고, 유사·중복된 위원회를 남발해 설립, 형식적인 운영 등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실정이다.

한편, 행정 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8월 현재 경기도 내 31개 기초 자치 단체에 설치·운영되는 각종 위원회는 총 2,885개이고, 위촉된 위원 수는 31,170명이며, 기초 자치 단체별로 평균 93.0개(위원 수 1,005명)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31개 기초 자치 단체 중 시(市) 단위에서는 평균 98.04개(위원 수 1,065.21명), 군 단위에서는 46.67개(위원 수 448.00명)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더불어 2021년 현재 고양시에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는 총 151개(위원 수 1,726명)이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용인시(155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위원회를 보유한 상황이다. 또한 여타 특례시(수원시 102개, 창원시 95개)와 비교하여도 상대적으로 많은 위원회가 운영되는 실정이다.<sup>1)</sup>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양시의 각종 위원회는 전문성에 기반한 정책 결정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운용되나, 언급한 바와 같이 고양시 또한 양적·질적인 부분에서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다. 특히, 유사 규모의 지방 자치 단체와 비교하여 고양시의 위원회가 행정사무 대비 양적으로 과다하며, 위원들 또한 내외부 인적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중복된 위원회 활동으로 인해 이해충돌 등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는 유사·중복된 자문 기관을 설치하여서는 안 되며, 매년 자문 기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방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총량과 최근 5년간의 평균 증감률이 3.8%인 것을 고려하면, 각종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 및 정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전문성의 확보와 의견수렴을 원활히 하려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명료한 정비기준의 설정, 이를 통한 위원회의 구조조정 등 지속된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핵심적인 목적은 현재 운영 중인 고양시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실태 분석을 면밀히 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정비기준을 제시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현재 설치·운영 중인 모든 위원회에 대한 실태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구조화된 조사표를 개발하고, 개별 위원회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하여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는 데 핵심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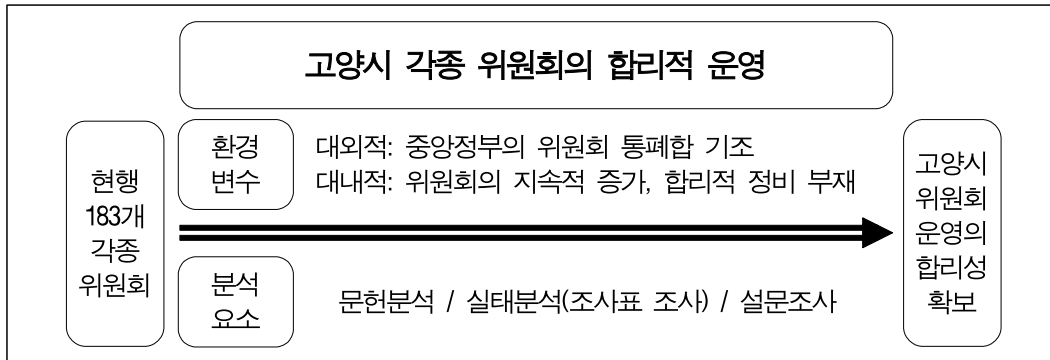
둘째, 향후 고양시 위원회 정비계획의 핵심 사항인 정비기준의 검토가 요구된다. 선행 연구와 관련 법제 분석, 설문 조사 등을 토대로 하여 향후 정비계획의 효용성을 확보해 주는 실질적인 정비 대상 위원회 선정 기준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

1) 국가통계포털(KOSIS) 검색일: 2022.01.02.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00400115&conn\\_path=1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00400115&conn_path=13))

마지막으로 향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관련 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제도적·운영적 측면에서의 개선 대안을 도출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목적



---

##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

위원회를 포함한 자문 기관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는 그 대상에 따라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로 대분되며, 연구의 성격에 따라서는 학술적 연구와 정부 연구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에서 의뢰한 정책 연구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유사 및 선행 연구는 다음 [표 1-1]과 같다.

보는 바와 같이 학술적 성격의 연구는 지방 자치 단체의 위원회 제도 운영 및 실태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특정 지방 자치 단체를 사례로 하여 제도 및 운영의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정책 연구는 해외 사례 및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와 심층 면접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지방 자치 단체의 위원회 운영에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한 효율성 확보와 위원회 성격별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 기회 차별 적용,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는 인재 풀(human resource pool) 구성, 위원회의 역할 정립과 독립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는 고양 특례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으며, 기초 자치 단체 차원에서 실질적인 연구의 부재함과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통한 민관 협치의 핵심적인 기제가 위원회 제도인 점에 착안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현행 고양시의 각종 위원회(183개)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분석과 개별 위원회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관련 전문가의 판단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표 1-1] 지방 자치 단체 위원회 관련 유사 연구

연도	연구자	연구명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2020	박준호 외	부산시 위원회 제도 혁신 방안 연구	문헌 연구 설문 조사 심층 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li> <li>• 제도 혁신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의 다양한 참여 채널 확대</li> <li>- 공정하고 책임 있는 위원회 활동 보장</li> <li>- 유사 위원회 정비</li> <li>- 위원회 정책 수행별 환류 체계 구축</li> <li>- 안전 중복성 대응력 강화</li> </ul> </li> </ul>
2019	김태운	정책 공동체 관점에서의 지방 자치 단체 위원회 운영 특성에 관한 연구	문헌 연구 심층 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자치 단체 위원회에 대한 이론적 검토</li> <li>• 정책 공동체 모형의 검토(멤버십, 통합성, 자원, 권력)</li> <li>• 정책적 시사점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재 풀 구성 필요</li> <li>- 전문가들의 멤버십 참여 가치 공유 필요</li> <li>- 위원회 논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급 필요</li> </ul> </li> </ul>
2018	송광태	지방 자치 단체 위원회에 대한 실태 분석 경상남도 위원회의 제도와 운영을 중심으로	문헌 연구 실태 분석(정보 공개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li> <li>• 경상남도 168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실태 분석</li> <li>• 제도적·운영적 개선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정부 스스로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용 의지 필요</li> <li>- 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의 명확화 필요</li> <li>- 위촉직의 전문가 확대 필요</li> <li>- 중립적 위원장 선임 필요</li> <li>- 전체 위원회를 관리하는 위원회 필요</li> <li>- 정기적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 필요</li> <li>- 충분한 회의 시간 및 예산 확보</li> </ul> </li> </ul>
2018	최성두	지방 자치 단체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조례 제정권을 중심으로	문헌 연구 사례 분석(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li> <li>• 지방 자치 단체 위원회 현황 분석</li> <li>• 제도적·운영적 개선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자치법」 제116조의 개정 필요</li> <li>-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합 의제 행정 기관 사항 추가 필요</li> <li>-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도 조</li> </ul> </li> </ul>

연도	연구자	연구명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레를 통해 통폐합이 가능토록 개정 필요</li> </ul>
2014	주재복 외	한국과 일본의 지방 자치 단체 위원회 실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헌 연구</li> <li>비교 연구</li> <li>- 경기도, 가나가와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li> <li>• 경기도와 가나가와현의 위원회 운영 실태 비교 분석(법령, 근거, 성격, 기능, 구성, 실적)</li> <li>• 운영적 개선 방안 제시</li> <li>- 통폐합 등 지속적인 정비 필요</li> </ul>
2012	김필두 외	지방 자치 단체 외부 인재 풀의 구성과 활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헌 연구</li> <li>설문 조사</li> <li>심층 면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 인재 풀에 대한 이론적 검토</li> <li>• 실태 분석 및 문제점 도출</li> <li>• 외부 인재 풀 우수 사례 분석(의정부시)</li> <li>• 외부 인재 풀 활용 방안 제시</li> <li>- 외부 인재 풀 제도 정비 필요</li> <li>- 외부 인재 풀 활용 계획 수립 필요</li> <li>- 사회적·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필요</li> </ul>
2003	이종수 외	정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헌 연구</li> <li>사례 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위원회에 대한 이론적 검토</li> <li>•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 대한 해외 사례분석</li> <li>• 한국 정부 위원회 실태 분석</li> <li>• 개선 방안 제시</li> <li>- 자문 위원회의 역할 정립 필요</li> <li>- 위원회의 통할 관리 필요</li> <li>- 중복 설치 방지 및 일몰제 도입 필요</li> <li>-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필요</li> <li>- 인력 풀 확대를 통한 중복 참여 방지</li> </ul>

##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연구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며, 문헌 연구, 조사표 조사를 통한 실태 분석, 설문 조사, 전문가 자문을 통한 판단 분석이 이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연구 내용은 아래의 [표 1-2]와 같다.

구체적으로 문헌 연구를 통해 위원회 제도에 대한 포괄적 이론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위원회를 포함한 자문 기관에 대한 법제를 분석해 위원회 운영의 제도적 장치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중앙 정부와 17개 광역 자치 단체, 고양시 위원회의 현황을 파악하여 특징을 도출하였고, 고양시의 183개 위원회에 대한 조사표를 조사해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고양시의 개별 위원회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고,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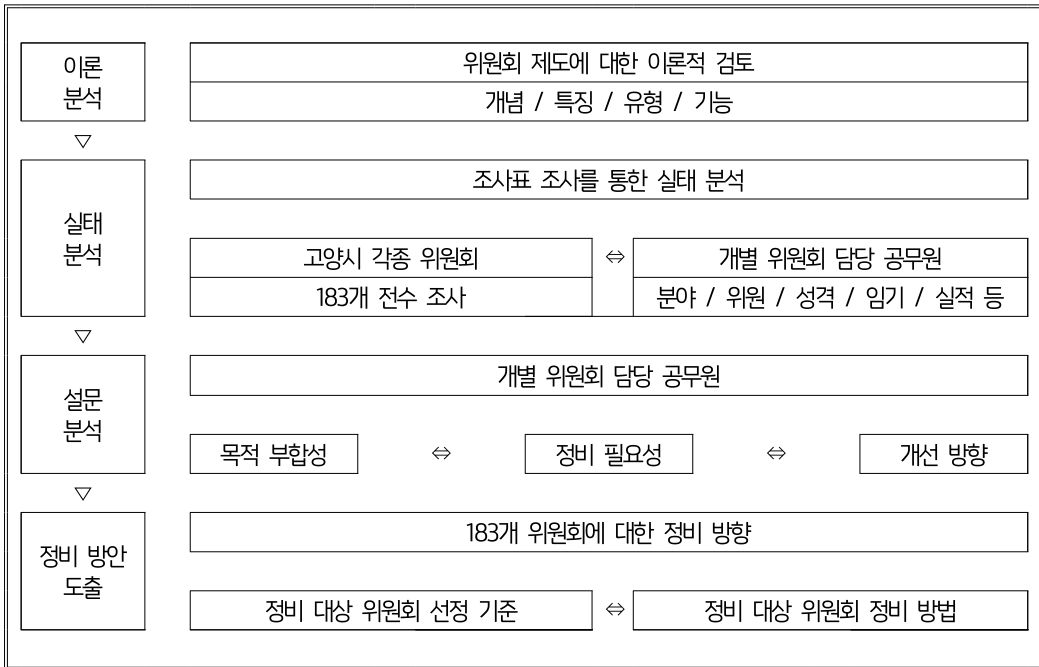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여 고양시 각종 위원회 정비 대상 선정 기준을 상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선정된 위원회의 정비 방향을 전문가 판단 분석을 토대로 제시하였다.

[표 1-2] 연구 방법의 주요 내용

구분	연구 방법	주요 내용
제1장 서론	-	-
제2장 이론적 배경	문헌 연구	• 위원회 제도에 관한 포괄적 문헌 검토와 자문 기관에 대한 법제 검토
제3장 고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문헌 연구 조사표 조사	• 중앙 정부 및 광역 자치 단체의 위원회 현황 분석 • 고양시의 각종 위원회 현황 분석 • 고양시의 183개 위원회에 대한 조사표 조사를 통한 운영 실태 분석
제4장 고양시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설문 분석	설문 조사	• 고양시의 개별 위원회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도출
제5장 결론	전문가 자문 판단 분석	• 위원회 정비 대상 선정 기준을 상정하고 실제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를 선정하여 정비 방향을 도출

전술한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 내용 등을 토대로 고양시 각종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체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2] 연구의 체계





## 제 2 장

### 이론적 배경

제1절 위원회 제도의 개념과 특징

제2절 위원회의 유형과 기능

제3절 각종 위원회의 법제 분석



## 제절 위원회 제도의 개념과 특징

### 1. 위원회의 개념

사회는 다수의 하부 체계(subsystem)의 구성물이며 사회를 구성하는 하부 체계 중 하나인 정부 역시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된 체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은 조직의 본질적 속성과 기능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위원회는 “다수로 구성된 합의제 조직”으로 정의되며, 이는 다양한 조직의 분류 기준 중 “조직의 의사 결정 방식”에 초점을 둔 정의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의사 결정 방식에 따른 조직의 한 유형이므로 위원회 조직이 지닌 특징을 파악하려면 먼저 조직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직은 이를 바라보는 관점과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며<sup>2)</sup> 제시된 정의가 조직의 전체 특징을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의를 통합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오세덕 외, 2019; 이창원 외, 2018; 민진, 2014). 먼저 조직은 ‘목적 지향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조직이 지향하는 목적은 조직을 둘러싼 환경에 따라 달라지나, 모든 조직은 추구하는 목적이 존재하며 이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의도한다. 또한 조직은 ‘사회적 실체’로서 두 사람 이상으로 구성된 사회적 집합체인데 구성원과는 별도의 실체로 존재한다. 이러한 면에서 조직은 스스로 활동하고 생존하는 일종의 유기체라 할 수 있다(민진, 2014). 한편 조직은 ‘구조적 활동 체계’이며 ‘계획된 조정 체계’의 특성이 있다. 조직은 역할과 임무 수행을 하는 구조와 활동 체계를 지니며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인적·물적·기술적 자원을 투입하여 이를 산출로 전환하는 조직 관리 체계를 유지한다(오세덕 외, 2019). 마지막으로 조직은 연속성을 지니며, 외부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개방적 실체이다. 조직은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일정 기간 존속하며, 다른 체계

<sup>2)</sup> 베버(Weber, 1947), 파슨스(Parsons, 1960), 에치오니(Etzioni, 1964), 존스(Johnes, 2007) 등은 조직을 공식적 목적을 달성하는 활동과 구조적 분화 체계로 보며, 셀즈닉(Selznick, 1993), 카츠와 칸(Katz and Kahn, 1966) 등은 개방 체제적 관점에서 조직을 환경에 대해 적응하는 사회적 단위로 개념화한다.

와 구별되는 일정한 경계를 지니고 환경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개방성을 지닌다.

위원회 역시 ‘조직’이므로 다수의 사람으로 구성된 목적 지향적인 개방적 실체로서 일정한 구조와 목적을 지닌다. 그러나 일반적인 조직 특성에 더하여 위원회가 다른 조직 유형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합의제 기관이라는 점이다. 위원회는 “결정 권한의 최종 책임이 기관장에 집중되는 일반 부처 조직과 달리 결정 권한이 모든 위원에게 분산되고 이들이 합의해 결론을 도출하는 합의제 조직 유형”이라 할 수 있다(유민봉, 2015). 조직의 의사 결정(decision making)은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이용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Griffin and Moorhead 2007).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회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수의 지식과 관점을 활용하는 특징을 지닌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참여와 합의를 통해 결정해 민주성을 높이고 외부 환경의 지지 확보에 기여한다(유민봉, 2015).

## 2. 위원회의 특징

위원회는 다수의 사람으로 구성된 합의제 조직으로 상호 간 대등한 권한과 지위를 갖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되며, 조직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의 불일치와 마찰 그리고 일반적인 관심 사항을 처리하도록 정기적으로 소집된다(이창원 외, 2018). 정부를 비롯한 공공 기관, 기업 등에는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며 특히 정부는 자문 위원회, 조정 위원회, 행정 위원회 등 다양한 성격의 위원회가 존재한다. 이러한 위원회의 일반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민진, 2014). 첫째, 위원회는 특정 주제를 심의·결정한다. 위원회는 모든 문제를 토의하거나 결정하지 않으며 위임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다루며 위원회 구성원 간 이해관계 혹은 입장 차이가 큰 문제를 다루기도 한다. 둘째,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결정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합의성의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참여하는 구성원은 특정 부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며 집단성이 강조되나, 의제의 범위는 같이 논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한정된다. 셋째, 위원회는 관련 주제의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결정에 이르는 심의 조직의 특성이 있다. 특히 이해관계가 상반되면 위원회의 이러한 심

의(審議)의 성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위원회의 유형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직접 집행하기도 한다. 이때 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집행 조직을 두며, 심의성을 높이고자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두기도 한다.

## 제2절 위원회의 유형과 기능

### 1. 위원회의 유형

위원회 조직은 의사 결정의 독자성과 집행 능력의 보유 여부에 따라 단독 기능형 (commission)과 보조 기능형(committee)으로 구분된다. 단독 기능형은 독자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한 위원회로 행정 위원회, 독립 규제 위원회 등이 있으며, 보조 기능형은 심의나 조정권을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자문 위원회가 대표적이다(민진, 2014). 먼저 행정 위원회는 독자적인 의사 결정권을 지닌 합의제 기관으로 행정 부처에 소속되나 독립적인 지위를 지니며 그 결정은 구속력을 지닌다. 이러한 조직으로는 선거 관리 위원회, 국가 권익 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독립 규제 위원회는 넓은 의미의 행정 위원회이며 자본주의 심화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시정하고자 19세기 말 이후 미국에서 크게 발달한 유형이다(권용수 외, 2007). 이러한 독립 규제 위원회의 성격을 갖는 기관으로는 공정 거래 위원회, 노동 위원회 등이 있으며, 행정 계층에서 독립성을 지니는 동시에 준입법적·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의결의 구속력이 있는 위원회와 달리 자문 위원회는 특정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자문에 응할 목적으로 설치된 참모 기관의 성격을 지닌 합의제 조직으로 현재 가장 널리 활용된다(권용수 외, 2007; 민진, 2014). 한편 이러한 자문 위원회와 행정 위원회의 중간 성격을 갖는 위원회로 조정 위원회가 있다. 조정 위원회는 상이한 의견과 입장 그리고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하여 합의에 도달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된 합의제 조직이다. 조정 위원회는 단순한 건의 권한만이 있는 경우와 의결권까지 갖는 경우가 있으며, 경제 장관 회의, 치안 관계 대책 회의 등이 이러한 위원회 유형에 해당한다(민진, 2014).

## 2.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전문가의 의사 반영을 통해 의사 결정의 질을 높이고 다수의 참여와 합의를 존중하는 민주 이념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양적·질적으로 확대된 행정의 조정과 통합 기능을 갖는다(이종수 외, 2003; 이창원 외, 2018). 반면 위원회는 다수의 합의를 통한 의사 결정의 특징을 지니므로 의사 결정이 지연되거나, 타협적 의사 결정과 결정에 대한 책임 회피 등의 역기능이 발생한다. 먼저 위원회의 순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원회는 특정인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권한 남용의 방지 기능을 수행한다. 즉 위원회 구성을 통해 계층제의 정점에 집중되는 지나친 권한의 독점과 남용을 방지하며, 행정 및 정치에서 독립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한다(Koontz et. al., 1984; 이종수 외, 2003 재인용).

둘째, 위원회는 조직 내부 그리고 조직 간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 제도는 토론과 타협을 통한 이해관계 조정과 의사 결정을 기반으로 하므로 다양한 부서 내 그리고 부서 간 소통을 통해 상호 조정과 협력을 유도한다. 위원회는 조직의 의사 결정에 더 많은 관계자가 참여하게 함으로써 조직원의 조직 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통해 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조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민진, 2014). 아울러 조직 내부의 특정 부문의 업무와 활동은 다른 부문 그리고 다른 부서와 연계된 때가 많다. 이때 위원회는 단일 조직 단위를 넘어서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 업무 협조와 조정하는 데 유용한 기능을 수행한다. 즉 위원회는 업무와 관련된 부서 간 아이디어 교류와 의사소통 촉진을 통해 갈등 해소와 의견 조정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부서 간 갈등 감소와 의견 조정에 효과적 기능을 수행한다(이종수 외, 2003).

셋째, 위원회 제도는 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할 기회를 부여하여 정책에 대한 정당성 확보와 민주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모든 정책은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를 발생시키며 이러한 편익과 비용은 대부분 비대칭적으로 분포한다. 특히 이해관계가 비용과 편익의 대상 집단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이해관계의 대립 정도가 클수록 정책 결정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위원회 제도는 정책 관련자들의 직접적 참여와 숙의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입장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 결과 위원회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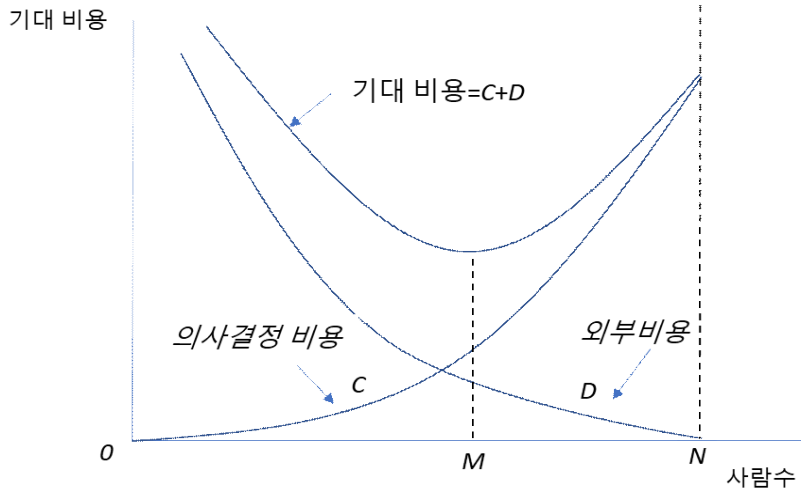
정 사항의 집행 동기와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넷째, 위원회는 전문적 지식의 도입과 정책과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한다(이종수 외, 2003; 민진, 2014). 현대 사회의 문제는 과거와 달리 이념·경제·사회 각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매우 단편적 시각으로 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s)일 때가 많다. 따라서 행정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 조직 외부에서 외부 전문가의 지식을 정부의 의사 결정에 도입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한다(Hayes, 2000). 또한 최고 관리자의 변동으로 인해 정책이 변동되는 독립제와 달리 다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특징은 정책과 관리의 연속성을 가능케 하여 구성원과 정책 고객에게 정책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한편 다수의 협의와 조정에 의존하는 위원회의 특징이 창출하는 순기능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역기능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먼저 위원회는 다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의 특징으로 인해 최고 관리자에 의해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독립제 조직과 달리 의사 결정이 지연되며 그 비용도 매우 크게 발생한다.

아래의 [그림 2-1]은 특정 사안에 대한 의사 결정 시 찬성 인원수와 의사 결정 비용 간 관계를 도해한 것이다.

[그림 2-1] 최적 다수결 인원수



출처: Buchanan and Tullock(1962)



[그림 2-1]의 의사 결정 비용(C)은 참여자들의 동의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따른 비용을 나타내며, 동의자를 많이 확보하려 할수록 증가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우상향하는 형태를 띤다. 반면 외부 비용(D)은 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 의안에 반대하던 사람이 느끼는 부담을 나타내는 것으로, 찬성하는 사람의 비중이 높을수록 감소하므로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나타난다. [그림 2-1]은 위원 위원회의 구성인원이 많아지면 구성원이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며 의사 결정이 지연해 의사 결정 비용이 크게 나타남을 시사하며, 의사 결정의 지연은 정책 시차 문제의 원인이 된다.

또한 위원회를 통한 결정은 책임 회피 현상의 원인이 되며 타협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위원회의 결정은 책임의 공유와 분산을 특징으로 하므로 독임제 조직과 비교해 절대적인 책임감을 느끼기 어려우며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박준호 외, 2020). 아울러 위원회의 결정은 최적 의사 결정이라기보다는 다수 위원의 공통분모만을 반영하는 타협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환경적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박준호 외, 2020; 민진, 2014).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문제 해결이 아닌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부처 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관료와 부처는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 회피와 정책의 정당화 그리고 업무 수행의 편의를 위해 위원회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으며, 유사한 인사의 재임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위원회를 활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제시된다(전영평·장임숙, 2005). 또한 특정 부처가 설립하는 위원회는 그 부처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크므로 다른 부처와 관련 문제에 대한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위원회를 해당 조직의 예산 및 인력 확보와 영향력을 증대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유인이 존재한다(이종수 외, 2003).

상기한 바와 같이 위원회가 지닌 순기능과 역기능은 위원의 합의에 의존하는 위원회 조직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위원회가 지닌 기능의 양면성은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무엇보다 현장의 위원회가 어떻게 운용되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어 검토된 문제에 기반하여 위원회가 지닌 전문성과 민주성이 조화를 이루는 적극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제3절 각종 위원회의 법제 분석

### 1. 중앙 정부의 위원회 설치 근거

중앙 정부의 위원회(자문 기관)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근거 법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정부조직법」 과 「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 기관의 설치)에서는 행정기관에 시험 연구 기관, 교육 훈련 기관, 문화 기관, 의료 기관 그리고 자문 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며, 「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부속 기관과 그 하부 조직의 설치)와 제20조(자문 기관의 설치)에서는 소관 사무를 지원하도록 행정기관은 부속 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자문 기관을 설치할 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동 법률 제5조에 따르면, 행정 위원회는 ①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③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④ 업무가 계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등을 설치 요건으로 한다. 다만, 행정 위원회를 제외한 자문 위원회는 전술한 요건 가운데 ①과 ②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행정 위원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토록 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설치는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며, ①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② 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③ 존속 기한(존속 기한이 있는 경우), ④ 위원의 결격 사유, 제척·기피·회피, ⑤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등을 명시토록 한다. 다만, 위원의 결격 사유 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때로 한정한다.

[표 2-1] 중앙 정부의 위원회 관련 법적 근거

구분	조항	조명	주요 내용
정부 조직법	제4조	부속 기관의 설치	행정 관에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연구 기관 교육 훈련 기관 문화 기관 의료 기관 제조 기관 및 자문 기관 등을 둘 수 있다.
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	부속 기관과 그 하부 조직의 설치	<p>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부속 기관을 둘 수 있다.</p> <p>② 부속 기관의 장의 직급은 그 기관의 규모와 소관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적당하게 배정하고, 직무 등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며, 기관장과의 근무 교대제의 운영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기관장을 둘 수 없다.</p> <p>③ 자문 기관을 제외한 부속 기관의 하부 조직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부속 기관 중 시험 연구 기관 및 의료 기관의 하부 조직의 설치 기준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p>
	제20조	자문 기관의 설치	제19조 제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부속 기관으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 자문 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 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기본 원칙	<p>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는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정하고 적절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합의 및 협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제3조	적용 범위	<p>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li> <li>2. 국무총리와 그 소속 기관</li> <li>3.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앙 행정 기관과 그 소속 기관</li> </ol> <p>② 제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및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앙 행정 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앙 행정 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요건	<p>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 기관(이하 “행정 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li> <li>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li> <li>3. 기존 행정 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li> </ol>

구분	조항	조명	주요 내용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② 행정 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제항 제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절차 등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 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 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 사유, 제척(除斥)·기피·회피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 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 제3항에 따른 분과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 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설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ow.go.kr), 검색일: 2022.08.10.

## 2. 지방 자치 단체의 위원회 설치 근거

지방 자치 단체의 위원회(자문 기관)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근거 법률은 크게 「지방자치법」 과 개별 법령으로 구분된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는 위원회(자문 기관) 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동 조항 제3항에 근거하여 타 법령을 통해 자문 기관의 설치·운영 또한 가능토록 규정한다. 그리고 동 조항 제4항에서는 유사 또는 중복되는 자문 기관의 설치를 제한하고, 조례를 통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 기관의 기능을 포함 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더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의 자문 기관은 ①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을 설치 요건으로 하며, 동 시행령 제80조에 근거하여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 기관의 존속 기한을 반드시 조례에 명시토록 강제할 뿐만 아니라 5년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도록 규정된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지방 자치 단체의 자문 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명시한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서는 지방 자치 단체의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기관으로서 ‘지방 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강제한다.

[표 2-2] 지방 자치 단체의 위원회 관련 법적 근거

구분	조항	조명	주요 내용
지방 자치법	제130조	자문 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 자치 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 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 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 자치 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 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 자치 단체는 자문 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 자치 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 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 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 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자문 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 기관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 기관 운영 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78조	자문 기관의 설치 요건	지방 자치 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 제항에 따른 자문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9조	자문 기관의	① 법 제30조 제항에 따른 자문 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구분	조항	조명	주요 내용
		구성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 제항에 따른 자문 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0조	자문 기관의 존속 기한	① 지방 자치 단체는 법 제130조 제항에 따른 자문 기관을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 기관의 존속 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항에 따른 존속 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 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지방 재정법 (개별 법령 예시)	제33조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지방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 연도부터 5 회계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 의회에 제출하고,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⑧ <생략> ⑨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 자치 단체에 지방 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를 둔다. ⑩ 제9항에 따른 지방 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⑪ <생략>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일: 2022.08.10.

### 3. 고양시의 위원회 설치 근거

고양시의 위원회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 법령과 자치 법규(조례, 규칙 등)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다만, 여타의 지방 자치 단체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설치되거나, 향후 설치될 위원회에 대한 관리적 차원에서의 통할 규정을 적용한다.

동 조례는 총 26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 시 투명성·공정성·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시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일반 구청에 설치·운영되는 위원회에 적용된다. 그리고 앞서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즉, 설치 요건과 존속 기한, 유사·중복 위원회의 기능 통합,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그리고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작성·제출 등을 규정한다.

[표 2-3] 고양시의 위원회 관련 법적 근거

구분	조항	조명	주요 내용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시정 참여 확대, 투명성·공정성·효율성 향상 기여
	제2조	정의	용어의 정의
	제3조	적용대상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에 설치된 위원회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설치 요건
	제5조	설치절차 등	각종 위원회 설치 방법 및 절차 등 - 설치 시 조례 등에 기재사항 - 새로운 위원회 설치 전 협의
	제6조	위원회 존속기한	위원회 존속기한 제한 - 5년의 범위 내 설정(법령 설치 제외) -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 점검 - 존속기한 관련 자문위원회(제25조) 검토
	제7조	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시 유사 위원회의 기능 확대 운영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 임기, 성별, 공무원 수 등 규정
	제9조	위촉직 위원의 공개모집	위촉직 위원의 의무적 공개모집
	제10조	위촉직 위원의 위촉 제한	위촉직 위원의 위촉 제한 규정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세부적인 위원회 운영 규정 - 위원장의 임무, 분과위원회 구성 등
	제12조	회의	위원회 회의의 개최 등 규정
	제13조	개인정보수집 동의성 및 청령서약서 제출	위촉직 위원의 작성 서류 등
	제14조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제15조	선정위원회	공개모집 된 위촉직 위원 응시자에 대한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6조	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규정
	제17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회 위원의 특정 안건 심의·의결 제척 규정
	제18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의 위원회 활동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
	제19조	수당 및 여비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제20조	회의록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21조	자료 제출	위원회 운영 담당부서의 제출 서류 등
	제22조	정보공개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정보 공개 등
	제23조	위원회 관리 등	각종 위원회 총괄부서의 위원회 및 위원회 현황 관리 등
	제24조	위원회 활성화 등	위원회에의 주민 참여 등 활성화 노력
	제25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총괄부서의 위원회 관련 관리를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26조	시행규칙	기타 사항 규정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검색일: 2022.08.16.



# 제 3 장

## 고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제1절 정부의 위원회 현황 분석

제2절 고양시 위원회의 현황 분석

제3절 고양시 위원회의 운영 실태 분석

제4절 소결



## 제절 정부의 위원회 현황 분석

### 1. 중앙 정부의 위원회 현황

#### 1) 기본 현황

행정 안전부(2021)에 따르면 2021년 6월 현재 중앙 정부의 행정기관 위원회는 총 622개이며, 이는 전년 대비 6.3%(37개) 증가한 규모이다. 총량을 중심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537개에서 매년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특히 2020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행정기관 위원회를 소속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총 622개 위원회 중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22개이며, 국무총리 직속 60개 그리고 각 중앙 부처 소속 위원회가 540개 설치·운영된다.

그리고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하고, 준입법적·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 위원회(「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른 합의제 행정 기관)는 총 622개 중 42개이며, 나머지 580개는 행정기관의 의사 결정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자문위원회로 나타났다.

[표 3-1] 중앙 정부의 연도별 행정기관 위원회 증감 현황(2021년 6월 기준)

(단위: 개,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개수	537	549	554	556	558	574	585	622
	증감	0.2	2.2	0.9	0.4	0.4	2.9	1.9	6.3
소속별	대통령	17	17	17	18	19	22	23	22
	국무	65	65	62	59	56	56	59	60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성격별	총리 각 부처	455	467	475	479	483	496	503	540
	행정 위원회	38	37	36	38	37	40	43	42
	자문 위원회	499	512	518	518	521	534	542	580

<자료> 행정 안전부(2021). '2021년 행정 기관 위원회 현황' p. 10. 재정리.

다음으로 위원회의 성격별로 설치 근거를 확인하면, 아래의 [표 3-2]와 같다. 먼저, 「정부조직법」 제5조 및 「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1조에 따른 행정 위원회(합의제 행정 기관)는 해당 규정에 따라 법률에 의해서만 설치가 가능하여 42개 모두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며, 자문 위원회는 총 580개 중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의거 각각 516개, 64개가 설치된다.

[표 3-2] 중앙 정부 위원회의 설치 근거별 현황(2021년 6월 기준)

(단위: 개)

구분	합계	법률	대통령령
합계	622	558	64
행정 위원회	42	42	-
자문 위원회	580	516	64

<자료> 행정 안전부(2021). '2021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p. 1.

그리고 중앙정부 위원회의 연도별 평균 회의 개최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13.2회, 2018년 13.0회, 2019년 13.7회, 2021년 14.5회로 2018년을 제외하고 점진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며, 지난 5년간 평균 회의 개최 실적은 13.6회로 확인되었다.

[표 3-3] 중앙 정부 위원회의 연도별 평균 회의 개최 실적

(단위: 회)

합계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평균
연평균 회의 개최 실적	13.2	13.0	13.7	13.8	14.5	13.6

〈자료〉 행정 안전부(2021). '2021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p. 16. 재처리.

한편,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간 위원회의 회의 개최 현황을 확인하면, 총 622개 중 2회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가 102개(1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21회 이상이 85개(13.7%), 1회 69개(11.1%), 3회 68개(10.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같은 기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71개(11.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4] 중앙 정부 위원회의 회의 개최 현황(2020.07~2021.06.)

(단위: 개, %)

합계	미개최	1회	2회	3회	4회	5~10회	11~20회	21회 이상	
위원회 수	622	71	69	102	68	65	113	49	85
비율(%)	100.0	11.4	11.1	16.4	10.9	10.5	18.2	7.9	13.7

자료: 행정 안전부(2021). '2021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p16. 재처리.

마지막으로 연도별 회의 미개최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회의하지 않은 위원회가 80개(14.4%), 2018년에는 78개(13.9%), 2019년 73개(13.0%), 2020년 65개(11.1%), 2021년 71개(11.4%)로 나타났으며, 점진적이기는 하나 지속해서 감소 추이를 보인다.

[표 3-5] 중앙 정부의 연도별 회의 미개최 위원회 현황

(단위: 개, %)

합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위원회 수(A)	556	558	574	585	622
회의 미개최 위원회 수(B)	80	78	73	65	71
비중 (B/A×100)	14.4	13.9	13.0	11.1	11.4

자료: 행정안전부(2021), '2021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p16.

## 2) 위원회 정비 현황

행정안전부는 2008년 '위원회 정비계획'을 확정된 이후 매년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 대상 위원회를 선정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통폐합 및 시정 보완을 지속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2008년 제1차 정비를 통해 18개 위원회를 폐지하였고, 7개 위원회는 소속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2015년에는 총 109개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고, 32개 위원회를 폐지하였으며, 2개 위원회는 존속 기한을 설정하고, 협의체로 전환 7개, 운영 활성화 16개, 정비 이월한 위원회는 52개였다.

더불어 2020년에는 89개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고, 4개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폐합하고, 52개 위원회를 시정 보완(운영 활성화)하였으며, 2021년에는 폐지 및 통폐합한 위원회가 각각 9개이고, 시정 보완(운영 활성화)한 위원회는 66개였다.

[표 3-6] 중앙 정부의 연도별 위원회 정비 실적

(단위 개)

구분	합계	폐지, 통폐합 (합의체 전환 등)	시정 보완		
			위원회 수	시정 내용	
2008	1차 (2월 기준)	25	18	7	소속 조정
	2차 (5월 기준)	'위원회 정비 계획' 확정 - 530개 자문 위원회 중 273개 통폐합 - 32개 위원회의 소속 및 직급 조정 등 2015년 4월 기준 성과 - 총 305개 위원회 중 226개는 폐지 또는 합의체로 전환, 25개는 시정 보완, 42개는 현행 유지, 미완료 12개			
2010	43	14	39	소속 조정 직급 조정 위원 수 및 자격 기준 조정 등	
2011	12	11	1	사문화된 법령 정비	
2012	10	9	1	소속 조정	
2013	7	7	0	-	
2014	8	8	0	-	
2015	57	41	16	존속 기한 설정 등	
2016	22	15	7	설치 근거 조정 민간 위원 확대 운영 활성화 등	
2017	17	10	7	민간 위탁 소속 조정 직급 조정 등	
2018	17	7	10	운영 활성화 등	
2019	21	5	16	운영 활성화 등	
2020	56	4	52	운영 활성화 등	
2021	84	18	66	운영 활성화 등	

자료: 행정 안전부(2021). '2021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p19-57. 재정리.

한편, 행정 안전부는 2022년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음과 같은 핵심 요건을 적용했다. 하나는 비수도권 지역과 청년 세대 등 위원의 구성을 다양화하고자 수도권 을 제외한 민간 위원 위촉 비율을 종전 4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청년 관련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에는 반드시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위촉하도록 하였다.

다른 하나는 국가 인재 DB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민간 위원의 중복 위촉을 방지 하도록 점검을 지속하고, 마지막 하나는 정책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위원회 간 안건을 공유하거나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간 협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표 3-7] 2022년 행정 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주요 요건

구분	주요 내용
청년 위원 등 위원 구성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수도권 지역과 청년 세대 등 위원 구성 다양화</li> <li>- 지역 대표성 강화 차원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민간 위원 위촉 비율 50% 상향</li> <li>- 청년 관련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에 반드시 청년이 참여하도록 하고, 일정 비율 이상 위촉 권고</li> </ul>
민간 위원 중복 위촉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 위원 중복 위촉을 방지하는 점검·관리 강화</li> <li>- 국가 인재 DB 등을 통해 중복 위촉 여부 확인</li> </ul>
위원회 간 협업 활성화 등 운영 내실화	정책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위원회 간 안건 공유, 연석회의 개최 등 협업 추진

자료: 행정 안전부(2021). '2021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p58-59, 재정리.

## 2. 지방 자치 단체의 위원회 현황

지방 자치 단체 중 17개 광역시·도의 연도별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현재 광역 자치 단체의 위원회 총수는 2,612개이며, 평균적으로는 153.65개의 위원회가 설치·운영 되고, 2017년 이후 매년 소폭 증가 추이를 보인다. 그리고 17개 광역 자치 단체 중 경기도가 231개로 가장 많은 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경상북도가 111개로 가장 적은 위원회가 운영 되고, 특·광역시 중에서는 부산광역시가 199개로 가장 많은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더불어 2018년 이후 2021년까지 광역시·도별 평균 증감률을 비교하면, 경상남도가 1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충청남도 13.3%, 세종특별자치시 13.2%, 경기도 11.9%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17개 광역시·도 중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유일하게 -0.5%의 평균 증감률을 보였다.



[표 3-8] 광역 자치 단체의 연도별 위원회 현황

(단위: 개, %)

합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증감률
	위원회 수	증감율	위원회 수	증감율	위원회 수	증감율	위원회 수	증감율	위원회 수	증감률	
서울	141	-	137	-2.8	147	7.3	146	-0.7	159	8.9	3.2
부산	133	-	151	13.5	168	11.3	161	-4.2	199	23.6	11.1
대구	116	-	119	2.6	125	5.0	142	13.6	150	5.6	6.7
인천	153	-	157	2.6	164	4.5	178	8.5	187	5.1	5.2
광주	109	-	114	4.6	117	2.6	122	4.3	138	13.1	6.2
대전	119	-	136	14.3	155	14.0	162	4.5	157	-3.1	7.4
울산	89	-	99	11.2	99	0.0	112	13.1	119	6.3	7.7
세종	99	-	114	15.2	121	6.1	156	28.9	160	2.6	13.2
경기	150	-	157	4.7	189	20.4	232	22.8	231	-0.4	11.9
강원	104	-	119	14.4	118	-0.8	105	-11.0	113	7.6	2.6
충북	98	-	105	7.1	120	14.3	135	12.5	151	11.9	11.5
충남	96	-	101	5.2	127	25.7	125	-1.6	155	24.0	13.3
전북	108	-	105	-2.8	111	5.7	113	1.8	119	5.3	2.5
전남	97	-	97	0.0	108	11.3	129	19.4	134	3.9	8.7
경북	85	-	89	4.7	92	3.4	97	5.4	111	14.4	7.0
경남	97	-	97	0.0	125	28.9	146	16.8	167	14.4	15.0
제주	165	-	167	1.2	163	-2.4	164	0.6	162	-1.2	-0.5
<b>합계</b>	<b>1,959</b>	<b>-</b>	<b>2,064</b>	<b>5.4</b>	<b>2,249</b>	<b>9.0</b>	<b>2,425</b>	<b>7.8</b>	<b>2,612</b>	<b>7.7</b>	<b>7.5</b>
<b>평균</b>	<b>115.24</b>	<b>-</b>	<b>121.41</b>	<b>5.63</b>	<b>132.29</b>	<b>9.25</b>	<b>142.65</b>	<b>7.92</b>	<b>153.65</b>	<b>8.35</b>	<b>7.8</b>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검색일: 2022.08.20.

다음으로 17개 광역 자치 단체별 관할 기초 자치 단체의 연도별 위원회 현황을 살펴 보면, 위의 [표 3-9]와 같다.

구체적으로 2021년 현재 226개 시·군·구에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수는 총 16,728개 이며, 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이고, 2017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리고 관할 기초 자치 단체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경기도가 2,885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2,044개, 전라남도 1,566개, 경상북도 1,416개 순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6.8%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도가 2.3%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표 3-9] 광역 자치 단체별 관할 기초 자치 단체의 연도별 위원회 현황

(단위: 개, %)

합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증감률
	위원회 수	증감률	위원회 수	증감률	위원회 수	증감률	위원회 수	증감률	위원회 수	증감률	
서울	1,820	-	1,923	5.7	2,002	4.1	2,082	4.0	2,044	-1.8	3.0
부산	824	-	859	4.2	896	4.3	954	6.5	980	2.7	4.4
대구	389	-	407	4.6	425	4.4	448	5.4	466	4.0	4.6
인천	631	-	635	0.6	668	5.2	680	1.8	716	5.3	3.2
광주	336	-	349	3.9	375	7.4	368	-1.9	387	5.2	3.7
대전	336	-	358	6.5	363	1.4	370	1.9	394	6.5	4.1
울산	317	-	299	-5.7	359	20.1	373	3.9	405	8.6	6.7
세종	0	-	0	-	0	-	0	-	0	-	-
경기	2,314	-	2,321	0.3	2,643	13.9	2,797	5.8	2,885	3.1	5.8
강원	985	-	980	-0.5	1,071	9.3	1,065	-0.6	1,073	0.8	2.3
충북	733	-	774	5.6	810	4.7	864	6.7	875	1.3	4.6
충남	1,041	-	1,038	-0.3	1,143	10.1	1,156	1.1	1,183	2.3	3.3
전북	839	-	786	-6.3	881	12.1	902	2.4	981	8.8	4.3
전남	1,205	-	1,305	8.3	1,372	5.1	1,471	7.2	1,566	6.5	6.8
경북	1,164	-	1,116	-4.1	1,291	15.7	1,334	3.3	1,416	6.1	5.3
경남	1,122	-	1,105	-1.5	1,198	8.4	1,300	8.5	1,357	4.4	5.0
제주	0	-	0	-	0	-	0	-	0	-	-
<b>합계</b>	<b>14,056</b>	<b>-</b>	<b>14,255</b>	<b>1.4</b>	<b>15,497</b>	<b>8.7</b>	<b>16,164</b>	<b>4.3</b>	<b>16,728</b>	<b>3.5</b>	<b>4.5</b>
<b>평균</b>	<b>826.82</b>	<b>-</b>	<b>838.53</b>	<b>1.26</b>	<b>911.59</b>	<b>7.42</b>	<b>950.82</b>	<b>3.29</b>	<b>984.00</b>	<b>3.75</b>	<b>3.9</b>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지방 자치 단체 소속 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 검색일: 2022.08.20.

한편, 경기도 관할 31개 기초 자치 단체의 2021년 기준 위원회는 총 2,885개이며, 이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것이고, 2017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 추이를 보인다. 2021년 현재 31개 시·군 중 용인시가 155개로 위원회를 가장 많이 설치하였고, 다음으로는 고양시 151개, 성남시 133개, 화성시 128개, 부천시 120개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증감률에서 가평군과 연천군, 포천시만 감소 추이를 보며, 양주시가 25.7%로 가장 높은 평균 증감률을 보이고, 다음으로는 시흥시 16.3%, 이천시 16.0%, 하남시 13.2%, 파주시 13.0%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3-10] 경기도 관할 기초 자치 단체의 연도별 위원회 현황

(단위: 개, %)

합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위원회 수	증감률	위원회 수	증감률	위원회 수	증감률	위원회 수	증감률	위원회 수	증감률	증감률
가평균	60	-	59	-1.7	65	10.2	64	-1.5	53	-17.2	-2.6
고양시	130	-	132	1.5	136	3.0	146	7.4	151	3.4	3.8
과천시	85	-	86	1.2	93	8.1	95	2.2	94	-1.1	2.6
광명시	91	-	88	-3.3	92	4.5	97	5.4	106	9.3	4.0
광주시	74	-	77	4.1	92	19.5	84	-8.7	92	9.5	6.1
구리시	60	-	62	3.3	66	6.5	66	0.0	70	6.1	4.0
군포시	72	-	80	11.1	88	10.0	97	10.2	92	-5.2	6.5
김포시	72	-	58	-19.4	64	10.3	63	-1.6	89	41.3	7.7
남양주시	73	-	97	32.9	102	5.2	105	2.9	104	-1.0	10.0
동두천시	45	-	44	-2.2	55	25.0	56	1.8	61	8.9	8.4
부천시	109	-	114	4.6	118	3.5	120	1.7	120	0.0	2.5
성남시	96	-	105	9.4	119	13.3	126	5.9	133	5.6	8.6
수원시	90	-	82	-8.9	93	13.4	103	10.8	102	-1.0	3.6
시흥시	74	-	42	-43.2	83	97.6	89	7.2	92	3.4	16.3
안산시	104	-	100	-3.8	103	3.0	109	5.8	108	-0.9	1.0
안성시	63	-	65	3.2	80	23.1	84	5.0	87	3.6	8.7
안양시	92	-	94	2.2	94	0.0	104	10.6	104	0.0	3.2
양주시	36	-	66	83.3	76	15.2	81	6.6	79	-2.5	25.7
양평군	56	-	27	-51.8	39	44.4	37	-5.1	55	48.6	9.0
여주시	65	-	65	0.0	80	23.1	87	8.8	89	2.3	8.6
연천군	48	-	50	4.2	51	2.0	51	0.0	32	-37.3	-7.8
오산시	69	-	75	8.7	78	4.0	92	17.9	96	4.3	8.7
용인시	108	-	141	30.6	149	5.7	147	-1.3	155	5.4	10.1
의왕시	70	-	76	8.6	85	11.8	95	11.8	97	2.1	8.6
의정부시	61	-	66	8.2	66	0.0	77	16.7	77	0.0	6.2
이천시	60	-	51	-15.0	87	70.6	98	12.6	94	-4.1	16.0
파주시	62	-	44	-29.0	68	54.5	75	10.3	87	16.0	13.0
평택시	73	-	80	9.6	79	-1.3	86	8.9	84	-2.3	3.7
포천시	69	-	67	-2.9	66	-1.5	64	-3.0	68	6.3	-0.3
하남시	65	-	42	-35.4	69	64.3	82	18.8	86	4.9	13.2
화성시	82	-	86	4.9	107	24.4	117	9.3	128	9.4	12.0
합계	2,314	-	2,321	0.3	2,643	13.9	2,797	5.8	2,885	3.1	5.8
평균	74.65	-	74.87	0.48	85.26	18.50	90.23	5.72	93.06	3.80	7.1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 검색일: 2022.08.20.

마지막으로 고양시를 포함한 4개 특례시의 연도별 위원회 설치·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현재 용인시가 155개로 가장 많고, 고양시가 151개로 그 뒤를 따르며, 창원시가 95개로 가장 적은 수준을 보인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증감률을 확인하면, 용인시가 10.1%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다음으로는 고양시 3.8%, 창원시 3.7%, 수원시 3.6%로 확인되었다.

[표 3-11] 특례시의 연도별 위원회 현황

(단위: 개, %)

합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증감률
	위원회 수	증감률	위원회 수	증감률	위원회 수	증감률	위원회 수	증감률	위원회 수	증감률	
고양	130	-	132	1.5	136	3.0	146	7.4	151	3.4	3.8
수원	90	-	82	-8.9	93	13.4	103	10.8	102	-1.0	3.6
용인	108	-	141	30.6	149	5.7	147	-1.3	155	5.4	10.1
창원	83	-	88	6.0	99	12.5	101	2.0	95	-5.9	3.7
합계	411	-	443	7.8	477	7.7	497	4.2	503	1.2	5.2
평균	102.75	-	110.75	7.30	119.25	8.65	124.25	4.72	125.75	0.48	5.3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지방 자치 단체 소속 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 검색일: 2022.08.20.

## 제2절 고양시 위원회의 현황 분석

### 1. 일반 현황

2022년 8월 현재 고양시에 설치·운영되는 각종 위원회는 총 183개이며, 이는 2021년 대비 6.4% 증가한 수치이다. 연도별로 위원회의 총량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 추이를 보이며, 특히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1.0%인 17개 위원회가 새로이 설치되었다.

[표 3-12] 고양시의 위원회의 연도별 증감 현황

(단위: 개)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8월	
	개수	증감	개수	증감	개수	증감	개수	증감	개수	증감	개수	증감	개수	증감	개수	증감
고양시 각종 위원회	128	-	133	3.9	139	4.5	141	1.4	151	7.1	155	2.6	172	11.0	183	6.4

자료: 고양시 내부 자료

그리고 2022년 총 183개 위원회 중 104개는 법령(법률 96개, 시행령 7개, 시행규칙 1개)에 따라 설치되었고, 79개 위원회는 조례 등 자치 법규(조례 77개, 규칙 2개)에 근거하여 구성된다. 더불어 총 183개 위원회 중 140개는 강행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되며, 43개는 임의 규정으로 설치된다.

[표 3-13] 고양시 위원회의 설치 근거별 현황

(단위: 개)

구분	위원회 총수	설치 근거					설치 유형	
		법령			자치 법규		강행	임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고양시 각종 위원회	183	96	7	1	77	2	140	43

자료: 고양시 내부 자료

이와 함께 고양시 위원회의 운영 특성을 살펴보면, 총 183개 위원회 중 한시 위원회는 9개에 불과하며, 운영 성격에 따라서는 단독 기능으로서 심의는 71개, 의결 19개, 자문 28개, 의견수렴 4개 위원회가 운영 중이고, 대부분 둘 이상의 중복 기능을 보유하며, ‘심의’ 기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표 3-14] 고양시 위원회의 운영 특성 현황

(단위: 개)

구분	위원회 총수	운영 지속성		운영 성격(중복)			
		항시	한시	심의	의결	자문	의견 수렴
고양시 각종 위원회	183	174	9	71 (126)	19 (52)	28 (65)	4 (22)

자료: 고양시 내부 자료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의 담당 부서별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기술센터가 13개(7.1%)로 가장 많이 설치되고, 다음으로는 푸른도시사업소 8개(4.4%), 기획정책관과 아동청소년과, 주택과가 각각 7개(3.8%), 소상공인지원과와 환경정책과가 각각 6개(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구청을 비교하면, 덕양구청이 가장 많은 6개(3.3%)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언론홍보담당관을 비롯한 15개 부서의 29개 위원회는 법령이 아닌 자치 법규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된다.

[표 3-15] 고양시 위원회의 부서별 설치 현황

(단위: 개)

구분	위원회 개수	설치 근거						설치 유형		운영 지속성		운영 성격(중복)			
		법령			자치 법규			강행	임의	항시	한시	심의	의결	자문	의견 수렴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조례	규칙									
시장 직속	평화미래정책관	5	2	1		2		2	3	5		2	1	4	1
부시장 직속	감사관	1	1					1		1			1		
	언론홍보담당관	1				1		1		1		1			
	청년담당관	1				1		1		1		1		1	
	소계	8	3	1	0	4	0	5	3	8	0	4	2	5	1
기획	기획정책관	7	1	2		4		6	1	6	1	6	1	1	

구분	위원회 개수	설치 근거						설치 유형		운영 지속성		운영 성격(중복)			
		법령			자치 법규			강행	임의	항시	한시	심의	의결	자문	의견 수렴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조례	규칙									
조정실	예산담당관	5	5					5		5		4	1	2	1
	도시브랜드담당관	2				2		1	1	2		1	1	1	
	법무담당관	4	2	1			1	4		4		3	2	1	1
	정보통신담당관	2	2					2		2		1	1		
	소계	20	10	3	0	6	1	18	2	19	1	15	6	5	2
자치 행정국	행정지원과	3	3					3		3		3	2		
	주민자치과	2				2		2		2		1		1	
	세정과	2	2					2		2		1	2		
	회계과	1	1					1		1		1			
	재산관리과	1	1					1		1		1		1	
소계	9	7	0	0	2	0	9	0	9	0	7	4	2	0	
일자리 경제국	일자리정책과	5				5		3	2	4	1	3	1		1
	기업지원과	4	1			3		2	2	3	1	1	1	2	1
	소상공인지원과	6	1			5		3	3	5	1	4	1	3	
	전략산업과	2				2		1	1	2		1		2	
	소계	17	2	0	0	15	0	9	8	14	3	9	3	7	2
복지 여성국	복지정책과	3	3					3		3		3			
	찾아가는복지과	1				1		1		1		1	1	1	
	여성가족과	4	1			3		4		4		3	2	3	3
	노인복지과	3	2			1		2	1	3		2	1		
	장애인복지과	3	2			1		3		3		2	1		
	아동청소년과	7	3			4		6	1	7		5	1	2	
소계	21	11	0	0	10	0	19	2	21	0	16	6	6	3	
기후 환경국	환경정책과	6	2			4			6	5	1	3		3	2
	기후에너지과	3	1			2		3		3		2	2	3	2
	자원순환과	3	2			1		3		3		2		1	
	식품안전과	1	1						1	1		1			
	소계	13	6	0	0	7	0	6	7	12	1	8	2	7	4
교육 문화국	평생교육과	3				3		1	2	3		3		2	1
	문화예술과	3				3		3		2	1	3		3	
	관광과	2				2		2		2		1	1	1	
	체육정책과	1	1					1		1		1	1	1	
	소계	9	1	0	0	8	0	7	2	8	1	8	2	7	1
부시장 직속	신청사건설단	1				1		1				1		1	
	녹색도시담당관	2				2		1	1	2		2		1	1
	소계	3	0	0	0	3	0	2	1	2	1	2	1	1	1
도시 교통 정책실	도시계획정책관	2	2					2		2		2			
	철도교통과	2	2					2		2		2		1	
	버스정책과	1				1			1	1		1		1	1
	주차교통과	2				2		1	1	2		1	1	2	
	도로정책과	2	1			1		2		2		1		2	
	소계	9	5	0	0	4	0	7	2	9	0	7	1	6	1

구분	위원회 개수	설치 근거						설치 유형		운영 지속성		운영 성격(중복)			
		법령			자치 법규			강행	임의	항시	한시	심의	의결	자문	의견 수렴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조례	규칙									
시민 안전 주택국	시민안전과	3	3					3		3		2			1
	재난대응과	2	2					2		2		2	1	1	1
	주택과	7	4			3		3	4	7		3	3	3	1
	건축디자인과	5	5					5		5		4	1		
	토지정보과	4	4					3	1	4		4	2		
소계	21	18	0	0	3	0	16	5	21	0	15	7	4	3	
도시 균형 개발국	도시균형개발과	1				1		1		1		1			
	도시재생과	1	1						1	1		1		1	
	재정비관리과	4	2			2		2	2	4		4			
	소계	6	3	0	0	3	0	3	3	6	0	6	0	1	0
직속기관 및 사업소	덕양구보건소	4	4					2	2	4		1		4	
	일산동구보건소	2	2					2		2		2			
	농업기술센터	13	6			6	1	10	3	13		8	9	3	4
	덕양구도시관리과	2	1			1		2		2				2	
	푸른도시사업소	8	3	3		2		5	3	8		5		4	
	상하수도사업소	1	1					1		1				1	
	도로관리사업소	1	1					1		1		1			
	소계	31	18	3	0	9	1	23	8	31	0	17	9	14	4
일반 구청	덕양구청	6	5			1		6		5	1	6	3		
	일산동구청	5	4			1		5		4	1	4	3		
	일산서구청	5	3			1	1	5		5		2	3		
	소계	16	12	0	1	3	0	16	0	14	2	12	9	0	0
전체 합계	183	96	7	1	77	2	140	43	174	9	126	52	65	22	

자료: 고양시 내부 자료

마지막으로 고양시의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 3-16]과 같다. 운영 현황은 부서의 직제 순을 기준으로 하여 위원회의 법적 명칭과 설치 연도, 근거 법령 또는 자치 법규, 설치 목적 등을 세부적으로 적시하였다. 예로 평화미래정책관의 ‘고양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에 근거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해 자문하도록 2011년에 설치되었다.



[표 3-16] 고양시의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

연번	부서 명칭	위원회 명칭	설치 연도	설치 근거		조	설치 목적
				법령 및 설치 법규	조		
1		고양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2011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24조외2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및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자문	
2		고양시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20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13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	
3	평화미래 정책관	김대중대통령사저기념관심의위원회	2021	고양시김대중대통령사저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6~11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4		고양시지자체분관협의회	2018	지방지자체 분관 및 지방 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2조12	고양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내실 있는 지방 자치와 분관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	
5		고양시인권증진위원회	2015	고양시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10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 심의·자문	
6	감사관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	1993	공직자 윤리법	9	공직자 재산 등록 사항 심사 의결 등	
7	인문홍보 담당관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	1999	고양시 시정 소식지 발행 조례	6	고양 소식지 발간 업무의 효율적 추진	
8	청년 담당관	청년정책위원회	2017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9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등을 통해 고양시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 도모	
9		고양시정책개발기획위원회	201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63 63외5	고양시 정책 실행제 운영	
10		고양시법원민생추진위원회	2019	고양시 고양 지원의 지방 법원 승격을 위한 추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고양시민의 사법 평등권 보장	
11	기획 정책관	고양시제한심사위원회	2013	국민참여규정 제48조, 공무원 제1안 규정 제7조	8,7	채택 제안의 등급 결정 등 심의	
12		고양시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2021	고양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5	정책 연구 용역에 대한 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 정책 연구 용역의 활용도 제고	
13		고양시성과평가위원회	2011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	18	성과 관리 운영 계획 등 심의	
14		고양시농림축산식품위원회	2006	고양시 포상 조례 제13조, 고양시 농림공직자 포상 규칙 제9조	11,9	농림공직자를 포상하는 공적심사 의결	
15		고양시인구정책위원회	2018	고양시 저출산·고령 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	4	저출산·고령 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 위함	
16		고양시예산심사금감사위원회	2006	지방재정법 제48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	48, 54	예산 심과금 지급 심사	
17		고양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2012	지방재정법	39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 증대	
18	예산 담당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2015	지방지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26	지방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	
19		지방재정계획심사위원회	1992	지방재정법	33	지방 재정 계획 수립, 투자 심사, 민간 투자 사업의 심의, 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연번	부서 명칭	위원회 명칭	설치 연도	설치 근거		설치 목적
				법령 및 설치 법규	조	
20		고양시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2015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6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21	도시부	고양시도시브랜드위원회	2021	고양시 도시 브랜드 설치·제고에 관한 조례	7	고양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22	랜드 담당관	고양시청지중동경각부운영위원회	2013	고양시청 지중동경각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동 조례 시행 규칙	3	경각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23		고양시조례,규칙심의회	1992	지방자치법 시행령	28	자치·법규 제정, 개정, 폐지 심의, 의결
24	법무 담당관	소송심의위원회	2008	고양시 소송 사무 처리 규칙	23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 등의 소송 사무에 관하여 중요 소송 지정을 승의하기 위함
25		고양시적극행정위원회	2021	지방공무원법 제75조 2, 지방공무원 직무행정 운영 규정(대통령령)	75조2	적극 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26		고양시규제개혁위원회	1996	행정 규제 기본법	3	주민 심의 질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하는 규제 개혁 추진
27	정보통신 담당관	지역지능정보화위원회	1999	지능 정보화 기본법	11	지역 지능 정보화 관련 종합 계획 및 실행 계획 수립과 중요 사항 변경 추진, 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을 위함
28		소프트웨어사업과혁신의위원회	2022	소프트웨어 진흥법	50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내용의 확정
29	행정 담당관	고양시인사위원회	2012	지방공무원법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개인 급여계약 기간 조정 공무원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해 심의
30	지문과	고양시신산업진흥위원회	2020	신산업진흥법	24	산업 재해의 예방 및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31	주민참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20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2	정보 공개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
33	자치과	주민참여위원회	2016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7	주민 참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활성화하기 위함
34	세정과	자치공동체만들기위원회	확인 불가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6~23	자치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 방향을 자문하기 위함
35		기부금심의위원회	2006	기부금법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4조	147, 83	지법세 과세 전 적부 심사, 이의 신청, 세무 조사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함
36	회계과	고양시계약관리위원회	200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5, 14	자치 단체에 대한 자발적 기탁 금품에 대한 접수 여부 심의
37	재산 관리과	고양시공유재산심의회	201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고양시계약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유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지문
38	일자리 담당관	고양시일자리창출위원회	2011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4	일자리 창출 종합 대책 협의 및 자문 및 발전 방안 제안
39	정책과	고양시일자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	2020	고양시 일자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8	일자리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연번	부서 명칭	위원회 명칭	설치 연도	설치 근거		설치 목적
				법령 및 지지 법규	조	
40		노사민정협의회	2012	고용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	노사 민정의 협력 활성화와 노사 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 규정 협의에 상정할 의안 검토 및 조정,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처리, 협의회 활동 지원 등
41		노사민정실무협의회	2012	고용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8	고용시 신하 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 노동자 일타에 간단한 노동 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2		고용시 감정노동자관리보장위원회	2020	고용시 감정 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11	기업 활동 촉진 등을 위한 지원
43		고용시 기업지원위원회	2008	고용시 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9	기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44	기업	고용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1998	고용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6	여성 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 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과 여성 경제인의 자위 향상을 도모
45	지문과	여성기업지원위원회	2020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3	국내 대규모 개발 사업의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46		고용시 투자유치위원회	2018	고용시 투자 유치 촉진 조례	3	대규모 정교와 지역 중소 유통 기업의 균형 발전
47		유통업성장발전협의회	2011	유통업 유통 산업 발전법	7의5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시민의 소비 생활 향상 등을 위한 심의
48		고용시 소비자정책위원회	1999	고용시 소비자 기본 조례	24	공예 관련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 및 심의
49	소상공	고용시 공예산업진흥위원회	2020	고용시 공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1	공정 무역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심의, 지원
50	인사원과	고용시 공정무역 위원회	2020	고용시 공정 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9	공유 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심의
51		공유경제촉진위원회	2019	고용시 공유 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	12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고용시
52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2015	고용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	사회적 경제 육성 위원회를 둔
53	전략	고용시 미이스산업 지원위원회	2013	고용시 미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10	미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전문하기 위함
54	산업과	고용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위원회	2019	고용시 방송 영상 통신 산업 진흥 조례	19	방송 영상 통신 산업 기본 계획 수립 및 육성 발전 심의, 지원
55	복지	고용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2003	사회보장급여(이)용제본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41	관계 공공기관 연계 협력 강화 및 지역 사회 보장 계획 심의
56	정책과	생활보장심의위원회	2013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20조, 시행령 제35조		생활 보장 사업 기본 방향 및 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57		이로금여심의위원회	1991	이로 급여법 제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제11조		이로 급여법에 따른 이로 급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설치
58	찾아가는 복지과	저소득주요생활인정용자금심사위원회	1992	고용시 저소득 주민 생활 인정 용자금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	용자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용자금 결산 처분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의결
59		고용시 생활영양평가위원회	2020	생활 영양 평가법	13의2	생활 영양 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조정
60	여성	고용시 성평등위원회	1999	고용시 성평등 기본 조례	30	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 지원 협의, 고용시 성평등 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61		고용시 여성인적자원연대	2010	고용시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5	여성 폭력 예방 관련 기관 간 협력 사업 추진,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를

연번	부서 명칭	위원회 명칭	설치 연도	설치 근거		설치 목적
				법령 및 설치 법규	조	
62		고양시외국인주민내문화가족지원협의회	2012	고양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8	우한 공동 사태 관련, 고양시 여성 안전을 위한 사업 연계 등
63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1996	고양시 노인 복지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6	고양시 노인의 복지 증진과 안정된 생활 영위 지원
64	노인	노인맞춤돌봄협의체	2020	노인 복지법	27의2	노인 맞춤형 돌봄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내용 적정성 심사
65	복지과	고양시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23	장기 요양 기관 지정
66		고양시장애인복지위원회	2015	장애인 복지법	13	고양시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 심의
67	장애인	고양시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검사의위원회	2011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8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 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 지원 등급 등을 심의
68	복지과	고양시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2018	고양시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	고양시에 거주하는 발달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69		고양시지역돌봄협의체	2020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7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8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70		이동금수위원회	2006	고양시 이동 금식 지원에 관한 조례	9	고양시 이동 금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71		고양시지역이동센터위원회	2013	고양시 지역 이동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	고양시 지역 이동 센터 운영 및 지원 강화
72	이동	이동복지심의위원회	2016	이동 복지법	12	이동 복지법에 정한 이동 정책 시행 계획 및 수립
73	청소년과	이동학대예방위원회	2019	고양시 이동 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9	이동 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논의
74		보육정책위원회	2003	영유아 보육법	6	연도별 보육 계획 수립, 어린이집 수급 계획,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 등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 심의
75		지형정보보육심사위원회	2015	청소년 기본법	11	청소년 육성에 관한 지방 자치 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76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	2004	환경 정책 기본법	58	환경 주요 정책 사항 심의
77		고양시탄소중립시민실천연대운영위원회	2021	고양시 탄소 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시민 실천 연대의 활동 방향과 프로그램 개발 및 의견 수렴
78	환경 정책과	고양시 탄소중립추진위원회	2021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탄소 중립 도시 구축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및 고양시 환경 정책 추진 과제와 방향 설정 및 COP28 유치 추진
79		고양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2022	화학 물질 관리법	7조의2	화학 물질 안전 관리 및 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
80		고양시습지위원회	2022	고양시 습지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7	효율적인 습지의 보전·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
81		고양시환경교육위원회	2021	고양시 환경 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6	환경 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82		고양시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	2018	고양시 미세 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12	미세먼지 관련 정책 개발 및 기본 계획 수립 등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차분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의결
83	기후 에너지과	에너지위원회	2020	에너지법	9	고양시 에너지 정책 개발 및 평가 등 에너지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심의
84		가스공급심의위원회	2009	고양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5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취약 지역에 도시가스·에어 석유 가스 공급

연번	부서 명칭	위원회 명칭	설치 연도	설치 근거		설치 목적
				법령 및 설치 법규	조	
85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	2014	폐기물 관리법	14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 지침·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지원 평가 결과와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86	자원 순환과	고양시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11	고양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16	고양시 폐기물 처리 시설 주민 지원 기금의 운용 계획, 결산 등 심의
87		고양시음식물류폐기물분류사업재계획평가위원회	2018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16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추진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88	식품 안전과	고양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2011	식품 위생법	89	식품 위생 및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식품 진흥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함
89	평생 교육과	고양시평생교육협의회	2012	고양시 평생 교육 진흥 조례	5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 교육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 기관 간 협력 증진 목적
90		고양형혁신교육운영협의회	2019	고양시 고양형 혁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10	고양형 혁신 교육 지원 정책 방향 및 계획 수립 등
91		고양시교육발전심의위원회	2007	고양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6	각급 학교 보조 사업의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
92		고양시향토문화재위원회	2012	고양시 향토 문화재 보호 조례	3	고양시 향토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93	문화 예술과	고양시상징건축물등심의위원회	2019	고양시 상징건축물 등 보호지정에 관한 조례	6	고양시 상징 건축물 등 보호·지정하여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 및 지역 발전에 기여
94		고양시역사박물관간립추진위원회	2017	고양시 역사박물관 간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	고양시 역사 박물관 간립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자문
95	관광	고양시관광진흥위원회	2021	고양시관광진흥조례	36	고양시 관광 정책 및 관광 산업 육성 지원
96		고양시브랜드관광기념품심의위원회	2014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4	고양시 브랜드 관광 기념품 개발 및 육성
97	체육 정책과	체육진흥협의회	1992	국민진흥법	5	지역 체육 진흥 발전
98	산청사 간담단	고양시신청사간립기금심의위원회	2019	고양시 신청사 간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5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99	녹색도시 담당관	고양시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	202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13	차량소 배출 감소를 위한 녹색 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100		고양시지천가이용활성화위원회	2009	고양시 지천가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9	지천가 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지천가 이용 활성화를 위한
101	도시계획	도시계획위원회	19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3(110)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개발 행위 허가, 도시 관리 계획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
102	정책담당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25)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도시 관리 계획 중 지구 단위 계획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

연번	부서 명칭	위원회 명칭	설치 연도	설치 근거		설치 목적
				법령 및 지지 법규	조	
103	철도 교통과	고양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2009	교통안전법	13	교통안전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지역 교통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및 지원
104	교통과	고양시 교통영양평가심의위원회	2009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9	교통, 소통, 안전 등 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을 최소화하 도록 개선 대책 수립
105	버스 정책과	대중교통심의위원회	2007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	버스 교통 체계를 활성화하도록 의견 수렴
106	주차	주차장공유심의위원회	2021	고양시 주차장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	4	공유 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 사항 등 심의
107	교통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20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108	도로	고양시 지역간철산면활성화추진위원회	2020	고양시 지역간철산면활성화추진조례	10, 11	지역 건설 산업의 육성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이 목적
109	정책과	고양시기술회담위원회	2001	건설기술회담법	19	고양시가 시행하는 각종 건설 공사에 대한 설계 타당성 및 시공 적정성 등을 심의·지원하여 부실 설계·시공을 방지하고자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
110	시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2017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12외2	재난 및 안전 관리 민관 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111	인정과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05	지법 지지 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3	재난 관리 기금 운용 계획 변경, 결산 등 심의
112		고양시안전관리위원회	2005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11	재난 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113	재난	고양시지하안전위원회	2019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12	고양시 지하 안전 관리 계획 수립·변경 심의 등
114	대응과	재해영양평가심의위원회		자연재해 대책법	4	재해 영향 평가 협의
115		분양가심사위원회	2009	주택법 제59조, 공동 주택 분양 가격의 신정 등에 관한 시행 지침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사항 심의
116		고양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2022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55	임대료의 증액, 공공 임대 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 관리비 등 임대 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
117	주택과	고양시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20	고양시 공동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5	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한
118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	2006	공동 주택 관리법	85	공동 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심사 등
119		고양시공동주택리모델링지원위원회	2021	고양시 공동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한
120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2002	공동 주택 관리법	71	공동 주택 관리 분쟁에 따른 조정
121		고양시 주거복지위원회	2021	고양시 주거 복지 지원 조례	8	주거 복지 정책·사업에 대한 지원 심의
122		건축위원회	2011	건축법	4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기능 및 미관 증진에 기여
123	건축	건축사건개위원회	2013	건축사법 제30조의 4 및 건축사법 시행령	30조외2	건축사의 업무 행위 등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 등 징계
124	디자인과	육외광고심의위원회	2001	육외 광고물 등의 규제 및 육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7	육외 광고물 디자인 개선, 도시경관 조화

연번	부서 명칭	위원회 명칭	설치 연도	설치 근거		설치 목적
				법령 및 설치 법규	조	
125		경관위원회	2009	경관법(제29조), 경관법 시행령 제28조 경관위원회 설치 구성 등	29, 28	경관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 및 형성
126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2017	공공 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9	공공 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한
127		고양시지적재조사위원회	2013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9	고양시 지적 재조사에 관한 정책 등 심의·의결
128	토지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992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25	개발 공시 지기에 대한 심의
129	정보과	주소정보위원회	2021	도로명 주소법	29	주소 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 심의
130		지명위원회	1992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91	고양시 지명에 관한 제정 및 변경 심의
131	도시계획 개발과	균형발전위원회	2020	고양시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조례	10	균형 발전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 심의
132	도시 재생과	고양시 도시재생위원회	202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
133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09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	57	고양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134	재정비 관리과	도시재정비위원회	2020	도시재정비 추진을 위한 특별법	34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 및 변경 등 도시 재정비 촉진에 대한 지원 및 심의 의결
135		추진위원회및주합사용비용증감위원회	2016	고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13	고양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136		도시분쟁조정위원회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6	고양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137		고양시지역보건공간요건위원회	1998	지역보건법	6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의 수립 및 지역 보건 의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원
138	덕양구 보건소	고양시건강생활지원위원회	2019	국민건강증진법	10	건강 생활의 실천 운동을 추진
139		고양시감염병관리위원회	20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감염병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 신속 대응을 위한 의료 기관 협력 체계 구축과 지원
140		덕양구보건소차세대인양센터지역사회협약회	2018	차세대리법 제2조(국가) 등의 의무		지역 사회 차세대 관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차세대 관련 전문가의 자문, 유관 기관·단체의 협력 및 지원 필요
141	일산동구 보건소	정신건강심사위원회	200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53	정신 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
142		정신건강심사위원회	200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54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
143	농업기술 센터	고양시농업·농촌식품안전관리위원회	20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5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144		고양시농업·농촌식품안전관리위원회	2006	고양시농업·농촌식품안전관리 조례	6	고양시농업·농촌식품안전관리 조례 제정 등
145		머거리정책지원위원회	2021	고양시 머거리 보장 기본 조례	9	머거리 전략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연번	부서 명칭	위원회 명칭	설치 연도	설치 근거		설치 목적
				법령 및 지치 법규	조	
146		고양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2008	학교급식법	5	고양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147		학교급식지원센터관리공동운영협의회	2011	고양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5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련 중요 사항 심의
148		동물보호센터운영위원회	2016	동물보호법	15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149		고양시동물복지위원회	2020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	5	고양시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여 동물 복지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150		고양시농업진흥협동조합위원회	1996	농업진흥협동조합법	2	농업 산학 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151		고양시도시농업위원회	201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도시 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152		고양시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심의위원회	1996	농업인 품위별 생산조직제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기금 운용 조례	5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결산 보고서 작성, 성과 분석,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153		특화농산물육성위원회	2021	고양시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13	고양시 특화 농산물을 지정하여 육성 및 지원의 효율적 추진
154		농업기계운영협의회	2009	농업기계화 촉진법	6의3	임대 사업소 운영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함
155		고양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운영위원회	2020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5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156	덕양구 도서관	도서관운영위원회	1995	도서관법	30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 및 문화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를 위한
157		독서문화진흥위원회	2021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8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지문
158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2013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7		산사태 취약 지역의 적정한 지정 및 해제를 통해 인명,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159		고양시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	2018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 숲 등 조성, 관리 계획의 수립
160		고양시도시공원위원회	200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50	공원 조성 계획 및 도시 녹화 계획의 심의 공원 녹지 기본 계획에 대한 지문 그 밖에 공원 녹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161	푸른도시	고양시일산호수공원시민참여위원회	2017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1조	일산 호수 공원 시민 공원과 및 생태관광 자원화를 위한
162	사업소	고양시하천네트워크운영위원회	2015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하천 네트워크 활동의 기본 운영 방향 및 원활하고 효율적인 활동 방향을 지문
163		고양시생태하천관리기위원회	2011	고양시 생태하천관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고양시 생태 하천의 자원을 보호하고 하천 생물 다양성과 하천 공간을 보존하는 등 하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양시 생태 하천 살리기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164		고양시소하천관리위원회	2013	소하천정비법	26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재수립에 따라 연장 조정, 지방 하천 증축 결정, 택지 개발, 도시 개발 등에 따른 연장 조정, 폐지를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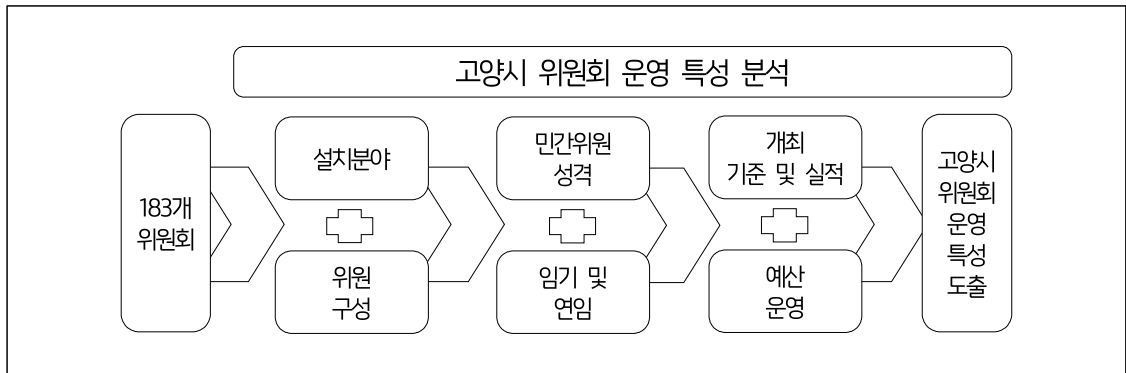
연번	부서 명칭	위원회 명칭	설치 연도	설치 근거		설치 목적
				법령 및 설치 법규	조	
165		고양시 지하수관리위원회	2019	지하수법 시행령	40	지하수 지역 관리 계획 수립, 지하수 영향 조사서 등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166	상하수도 사업소	수도물평가위원회	1992	수도법	30	상수도의 수질 관련 의견 교환 및 자문
167	도로관리 사업소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1998	도로법	61	도로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 및 주요 지하 매설물의 인전 대책 등을 심의·조정
168		덕양구 지적조사위원회	201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30	지역 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169		덕양구 경계결정위원회	201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31	지역 재조사 사업 경계 결정, 경계 결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결정
170		덕양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원회의(건설심의위원회)	2018	침사유변행위규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3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171	덕양구청	기본형공직노동특별관리위원회	2020	농업농촌공직노동특별관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15	기본형 공직 직별제 신청자의 지급 대상 적격 여부 심사
172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2007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14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형 시설물 중 교통량 감소 프로그램을 신청·이행한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 시행율 건 토·심의 후 교통 유발 부담금 감면을 결정하고자 구성
173		고양시 덕양구 주차차량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2007	침사유변행위규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3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
174		일산동구 경계결정위원회	201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31	지역 재조사 사업 경계 결정, 경계 결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결정
175		일산동구 지적조사위원회	201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30	지역 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176	일산 동구청	일산동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원회의(건설심의위원회)	2018	침사유변행위규제법	16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
177		고양시 일산동구 주차차량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2016	고양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진술을 심의하여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
178		일산동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1995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14	교통 유발 부담금 감면 프로그램 이행 검토 및 감면을 결정
179		일산서구 지적조사위원회	201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30	지역 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사항 심의·의결
180		일산서구 경계결정위원회	201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31	지역 재조사 사업 경계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181	일산 서구청	일산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원회의(건설심의위원회)	2013	침사유변행위규제법	16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과태료에 대한 의견 진술 심의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
182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1995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14	교통량 감소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경감 신청서 심의 및 감면을 결정
183		일산서구 주차차량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2010	고양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

## 제3절 고양시 위원회의 운영 실태 분석

### 1. 실태 분석 체계

현재 고양시에서 설치·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다각적인 실태 분석의 체계는 아래의 [그림 3-1]과 같다. 고양시의 위원회 183개를 대상으로 하여 설치 분야, 위원 구성, 민간위원 성격, 임기 및 연임, 회의 개최 기준 및 실적, 관련 예산 운영, 위원회 운영 성과 등으로 체계화하여 각종 위원회의 운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 3-1] 고양시 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체계



구체적으로 지방 자치 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분야별 비중을 파악하고, 위원 구성은 당연직과 위촉직, 성별 현황을 비롯하여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에 대한 규정의 존재 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위촉된 민간 위원의 전문성 유무와 거주지 또는 직장의 관내 여부, 법적 임기 및 연임 규정 유무, 연임 횟수 제한 등을 파악하였으며, 회의의 개최 기준과 실적, 위원회 관련 예산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요인에 대한 세부적 분석 내용은 [표 3-17]과 같다.

[표 3-17] 고양시 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내용

분석 요인		주요 내용
운영 실태	설치 분야	일반 공공 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 복지 등
	위원 구성	당연직, 위촉직, 성별, 성별 균형 규정, 전문성 유무 등
	임기 및 연임	법적 임기, 연임 유무, 연임 횟수 등
	개최 기준 및 실적	규정상 개최 기준, 회의 개최 실적
	예산 운영	위원회 관련 예산(수당, 운영비 등) 운영

한편, 고양시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자 고양시 본청과 직·사업소, 일반 구청의 위원회 운영 부서를 중심으로 조사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표 조사는 2022년 7월 1일부터 동 월 2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83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표의 구성은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치 근거, 설치 유형, 운영 성격, 설치 분야, 위원 구성, 개최 기준 및 실적, 운영 성과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성하였다.

[그림 3-2] 고양시 각종 위원회 실태 조사표

[고양시 각종 위원회 실태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정연구원은 고양시 산하 기관으로 시정의 전반적인 정책 발굴 및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고양시 각종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설치·운영 중에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본 조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각 문항 내용을 꼼꼼히 읽어주시고 정확한 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사항]**  
 - 1개의 위원회에 1개의 조사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팀 또는 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가 1개라면, 조사표 1개 작성, 2개 이상이라면 조사표 2개 이상 작성

소 관 부서명	( )과 ( )팀		위원회 법적명칭	운 영 지속성	항시	한시					
설 치 근 거	법령			자치법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법령명 :			제 조							
자치법규명 :			제 조								
설 치 유 형	강행	임의	운 영 성 격	심의	의결	자문	의견수렴				
설 치 목 적	○			최초 설치연도	( )년						
설 치 분 야	( ) ① 일반공공행정, ② 공공질서 및 안전, ③ 교육, ④ 문화 및 관광, ⑤ 환경, ⑥ 사회복지, ⑦ 보건, ⑧ 농림해양수산, ⑨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⑩ 교통 및 물류, ⑪ 국토 및 지역개발, ⑫ 과학기술, ⑬ 기타( )										
위 원 구 성 (명)	총원		당연직		위촉직						
	정원	현원	소계	남성	여성	의원	공무원	민간			
민간위원 성 격 (명)	관련 전문가		비전문가		민간위원 거주지(직장)	고양시 관내		고양시 관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거주지	직장				
위 원 임 기	1년 미만	1년	2년	3년	연 임 여 부	불가능	가능	연임 횟수			
개 최 실 적 (회)	2021년			2020년			관 련 예 산 (천원)	2021년		2020년	
	소계	대면	서면	소계	대면	서면		소계	수당	운영비	소계
규정상 개최기준				위원 성별 균형 규정			유	무			
위원회 운영 성과 (최근3년)	○										

## 2. 실태 분석 결과

### 1) 설치 분야

현재 고양시에 설치·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의 분야별 실태를 살펴보면, 총 183개 중 ‘일반 공공 행정’ 분야가 33개(1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26개(14.2%), ‘사회 복지’ 분야 24개(13.1%), ‘환경’ 분야 20개(10.9%), ‘교통 및 물류’ 분야 15개(8.2%), ‘농림 해양 수산’ 분야 14개(7.7%)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3-18] 고양시 위원회의 분야별 운영 현황

(단위: 개, %)

구분	위원회 설치 개수		
	개수	비율(%)	
분야별 설치	① 일반 공공 행정	33	18.0
	② 공공질서 및 안전	9	4.9
	③ 교육	3	1.6
	④ 문화 및 관광(체육 포함)	12	6.6
	⑤ 환경	20	10.9
	⑥ 사회 복지	24	13.1
	⑦ 보건	8	4.4
	⑧ 농림 해양 수산	14	7.7
	⑨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8	4.4
	⑩ 교통 및 물류	15	8.2
	⑪ 국토 및 지역 개발	26	14.2
	⑫ 과학 기술	1	0.5
	⑬ 기타	10	5.5
합계	183	100.0	

### 2) 위원 구성

고양시 각종 위원회의 정원 현황을 범주화하여 살펴보면, ‘10~15명 미만’이 61개(3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5~20명 미만’ 39개(21.3%), ‘5~10명 미만’ 36개(19.7%), ‘20~25명 미만’ 20개(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원에 대한 특별한 규정

이 없는 위원회가 8개(4.4%)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개별 위원회 중 정원 규모가 가장 큰 위원회는 ‘고양시기술자문위원회’로 총 150명에 이르며, 정원 규모가 가장 작은 위원회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포함한 5개 위원회로 각 5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표 3-19] 고양시 위원회의 위원 정원 현황

(단위: 개, %, 명)

구분		위원 구성(정원 최대)	
		개수	비율(%)
위원 정원	① 5~10명 미만	36	19.7
	② 10~15명 미만	61	33.3
	③ 15~20명 미만	39	21.3
	④ 20~25명 미만	20	10.9
	⑤ 25~30명 미만	6	3.3
	⑥ 30명 이상	13	7.1
	⑦ 규정 없음	8	4.4
	합계	183	100.0
최대 위원회	고양시기술자문위원회		150명
최소 위원회 (5)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노인맞춤돌봄협약체, 고양시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덕양구보건소차매안심센터지역사회협약체, 고양시덕양구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각 5명
미규정 위원회 (8)	고양시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 건축위원회, 건축사징계위원회,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추진위원회및 조합사용비용검증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고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고양시 위원회의 정원과 함께 현원 규모를 살펴보면, ‘10~15명 미만’이 61개(3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5~10명 미만’ 54개(29.5%), ‘15~20명 미만’ 37개(20.2%), ‘30명 이상’ 11개(6.0%)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현원이 없는 위원회는 6개(3.3%)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정원에 이어 현원에서도 ‘고양시기술자문위원회’가 142명으로 가장 많이 구성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포함한 6개 위원회는 각 5명의 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20] 고양시 위원회의 위원 현원 현황

(단위: 개, %, 명)

구분		위원 구성(현원 최대)	
		개수	비율(%)
위원 현원	① 5~10명 미만	54	29.5
	② 10~15명 미만	61	33.3
	③ 15~20명 미만	37	20.2
	④ 20~25명 미만	8	4.4
	⑤ 25~30명 미만	6	3.3
	⑥ 30명 이상	11	6.0
	⑦ 현원 없음	6	3.3
	합계	183	100.0
최다 위원회	고양시기술자문위원회		142명
최소 위원회 (6)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고양시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덕양구보건소치매안심센터지역사회협의체, 고양시덕양구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주차장공유심의위원회, 고양시일산동구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각 5명
현원 부재 위원회(6)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일산서구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고양시소하천관리위원회, 고양시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고양시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한편, 고양시 각종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현황을 확인하면, '1~3명 미만'이 81개(44.3%)로 가장 많았고, '3~5명 미만' 61개(33.3%), '5~7명 미만' 19개(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당연직 위원이 없는 위원회는 5개(2.7%)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당연직 위원이 가장 많은 위원회는 '고양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총 96명이며, '노인맞춤돌봄협의체'를 포함한 19개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이 1명으로 나타났다.

[표 3-21] 고양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현황

(단위: 개, %, 명)

구분		당연직 위원	
		개수	비율(%)
당연직 위원	① 1 ~ 3명 미만	81	44.3
	② 3 ~ 5명 미만	61	33.3
	③ 5 ~ 7명 미만	19	10.4

구분	당연직 위원	
	개수	비율(%)
④ 7~10명 미만	8	4.4
	9	4.9
	5	2.7
	합계	183
100.0		
<b>최다 위원회</b>	고양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96명		
<b>최소 위원회 (19)</b>	노인맞춤돌봄협약체, 고양시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덕양구보건소치매안심센터지역사회협약체, 기본형공익직불등록관리위원회, 고양시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고양시인권증진위원회, 노시민정실무협약회, 고양시지하안전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고양시지적재조사위원회, 동물보호센터운영위원회, 고양시동물복지위원회, 고양시탄소중립시민실천연대운영위원회, 독서문화진흥위원회, 고양시계약심의위원회, 김대중대통령사저기념관심의위원회, 고양시지방세심의위원회, 고양시지치분권협의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각 1명		
<b>당연직 부재 위원회(5)</b>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과업심의위원회, 수돗물평가위원회, 고양시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와 함께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고양시 의회 의원의 현황을 확인하면, ‘1~3 미만’이 89개(4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3~5명 미만’ 12개(6.6%), ‘7~10명 미만’ 7개(3.8%) 등이 다음을 이었고, 고양시 의회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위원회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포함한 64개이며,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포함한 20개 위원회에는 각 1명이 위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의원이 가장 많이 참여한 위원회는 ‘고양시도로관리심의회’이며 총 21명이 위촉되어 있다.

[표 3-22] 고양시 위촉직 위원 중 의원 현황

(단위: 개, %, 명)

구분	위촉직 위원(의원)		
	개수	비율(%)	
위촉 의원	① 1~3명 미만	89	48.6
	② 3~5명 미만	12	6.6
	③ 5~7명 미만	5	2.7



구분	위촉직 위원(의원)		
	개수	비율(%)	
	④ 7~10명 미만	7	3.8
	⑤ 10명 이상	6	3.3
	⑥ 없음	64	35.0
	합계	183	100.0
<b>최다 위원회</b>	고양시도로관리심의회		21명
<b>최소 위원회 (20)</b>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 고양시청직장운동경기부운영위원회, 지명위원회,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고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고양시인권증진위원회, 고양시저하안전위원회, 농업기계운영협의회, 고양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고양시상별영향평가위원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지역지능정보화위원회, 김대중대통령사저기념관심의위원회, 고양시외국인주민맞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도시재정비위원회, 고양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고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각 1명
<b>위촉직 의원 부재 위원회(64)</b>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고양시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덕양구보건소차매안심센터지역사회협약체, 고양시덕양구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일산서구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과업심의위원회, 주차장공유심의위원회, 고양시일산동구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고양시일산동구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고양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고양시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고양시향토문화재위원회, 고양시하천네트워크운영위원회, 고양시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고양시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노사민정실무협의회, 분양가심사위원회, 고양시입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고양시지적재조사위원회, 산사태추악지역지정위원회, 수돗물평가위원회, 일산동구지적재조사위원회, 일산서구지적재조사위원회, 고양시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고양시조례·규칙심의회, 고양시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 고양시기업지원전문위원회, 고양시감염병관리위원회, 일산동구경계결정위원회, 일산서구경계결정위원회, 소송심의위원회, 고양시공정무역위원회, 고양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계획평가위원회, 고양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일산동구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 고양시공유재산심의회, 고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학교급식지원센터민관공동운영협의회, 고양시관광진흥위원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고양시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고양시계약심의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고양시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고양호혜단지운영추진위원회, 고양시지방세심의위원회, 고양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고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회, 고양시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고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고양시방법원승격추진위원회, 고양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건축시정계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다음으로 고양시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공무원 현황을 확인하면, ‘1~3명 미만’이 38개(20.8%)로 가장 많았으며, ‘3~5명 미만’ 20개(10.9%)로 나타났고,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은 위원회는 121개(66.1%)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위촉된 위원회는 ‘고양형혁신교육운영협의회’와 ‘고양시도시브랜드위원회’로 각 9명이 활동하며, ‘덕양구보건소치매안심센터지역사회협의회’를 포함한 24개 위원회는 각 1명의 공무원이 위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23] 고양시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 현황**

(단위: 개, %, 명)

구분		위촉직 위원(공무원)	
		개수	비율(%)
위촉 공무원	① 1~3명 미만	38	20.8
	② 3~5명 미만	20	10.9
	③ 5~7명 미만	1	0.5
	④ 7~10명 미만	3	1.6
	⑤ 10명 이상	0	0.0
	⑥ 없음	121	66.1
	합계	183	100.0
최다 위원회	고양형혁신교육운영협의회, 고양시도시브랜드위원회		각 9명
최소 위원회 (24)	덕양구보건소치매안심센터지역사회협의회,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 기본형공직직불등록관리위원회, 고양시지역돌봄협의회, 고양시항토문화재위원회, 노시민정실무협의회, 고양시지적재조사위원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일산동구지적재조사위원회, 일산동구경계결정위원회, 일산서구경계결정위원회, 고양시평생교육협의회, 일산동구교통유발부담금감심심의위원회, 고양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주소정보위원회, 노시민정협의회, 고양시상징건축물등심의위원회, 체육진흥협의회, 고양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고양시도시공원위원회, 고양시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고양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각 1명
위촉직 공무원 부재 위원회(121)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노인맞춤돌봄협의회, 고양시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고양시덕양구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일산서구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고양시청직장운동경기부운영위원회, 가스공급심의위원회, 주차장공유심의위원회, 지명위원회, 덕양구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교통유발부담금감심심의위원회, 고양시일산동구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일산서구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고양시장		

구분	위촉직 위원(공무원)	
	개수	비율(%)
	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사위원회, 고양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운영위원회, 고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저소득주민생활안정용자금심사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고양시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고양시하천네트워크운영위원회, 고양시소하천관리위원회, 고양시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고양시인권증진위원회, 고양시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고양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고양시일자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 고양시브랜드관광기념품심의위원회, 고양시지하안전위원회, 고양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동물보호센터운영위원회, 고양시동물복지위원회, 농업기계운영협의회, 덕양구지적재조사위원회, 일산서구지적재조사위원회, 고양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고양시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고양시조례·규칙심의회, 고양시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 고양시기업지원자문위원회, 고양시탄소중립시민실천연대운영위원회, 에너지위원회,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 고양시감염병관리위원회, 특화농산물육성위원회, 고양시지하수관리위원회, 덕양구경계결정위원회, 소송심의위원회, 고양시공정무역위원회, 고양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계획평가위원회, 고양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 독서문화진흥위원회,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 고양시공유재산심의회, 고양시방송영상통신산업위원회, 고양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 고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고양시눈빛공적심사위원회, 고양시관광진흥위원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고양시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고양시적극행정위원회, 지역지능정보화위원회,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고양시공예산업진흥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고양시습지위원회, 고양시신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 고양시녹색건축물조성위원회, 대중교통심의위원회, 고양시공동주택리모델링자문위원회, 고양시주거복지위원회, 고양시일산호수공원시민참여위원회, 고양시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 김대중대통령서거기념관심의위원회, 고양시도시농업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 고양시역사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고양시자치분권협의회, 청년정책위원회, 고양시제안심사위원회, 고양시인구정책위원회, 고양시규제개혁위원회, 고양시인사위원회, 고양시소비자정책위원회, 고양시성평등위원회, 고양시장애인복지위원회,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고양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 고양시도시재생위원회, 고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양시일자리창출위원회, 고양시투자유치위원회, 고양시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고양시탄소중립추진위원회, 고양지방법원승격추진위원회, 주민참여위원회, 고양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고양시기술자문위원회, 고양시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 건축위원회, 건축사징계위원회,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추진위원회및조합사용비용검증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고양시 183개 위원회에 위촉된 민간 위원의 현황을 확인하면, ‘1~10명 미만’이 119개(6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10~15명 미만’ 34개(18.6%), ‘15~20명 미만’ 10개(5.5%)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비롯한 7개 위원회에는 민간 위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민간 위원이 가장 많이 위촉된 위원회는 ‘고양시기술자문위원회’로 총 167명이 활동하며, ‘의료급여심의회’를 비롯한 3개 위원회에는 각 1명의 민간 위원이 위촉되어 있다.

[표 3-24] 고양시 위촉직 위원 중 민간 현황

(단위: 개, %)

구분		위촉직 위원(민간)	
		개수	비율(%)
위촉 민간	① 1~10명 미만	119	65.0
	② 10~15명 미만	34	18.6
	③ 15~20명 미만	10	5.5
	④ 20~25명 미만	3	1.6
	⑤ 25~30명 미만	3	1.6
	⑥ 30명 이상	7	3.8
	⑦ 없음	7	3.8
	합계	183	100.0
최다 위원회	고양시기술자문위원회		167명
최소 위원회 (3)	의료급여심의회, 정신건강심의회, 소송심의회		각 1명
위촉직 민간 부재 위원회(7)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고양시소하천관리위원회, 고양시조례 규칙심의회, 고양시여성안전지역연대, 아동급식위원회, 고양시안전관리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회		

다음으로 183개 위원회 중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위원회는 139개(76.0%)이며, 나머지 44개(24.0%) 위원회는 성별 균형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25] 고양시 위원회의 성별 균형 위촉 규정 현황

(단위: 개, %)

구분		위원 성별 균형 위촉 규정	
		개수	비율(%)
성별 균형 규정	① 유	139	76.0
	② 무	44	24.0
	합계	183	100.0

마지막으로 고양시 각종 위원회에 위촉된 민간 위원 중 관련 분야 전문가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121개(66.1%)이며, 비전문가는 11개(6.0%), 혼합형은 44개(24.0%)로 나타났다.

[표 3-26] 고양시 위원회의 민간 위원 성격 현황

(단위: 개, %)

구분		민간 위원 성격	
		개수	비율(%)
민간 위원 성격	① 관련 분야 전문가	121	66.1
	② 비전문가	11	6.0
	③ 혼합	44	24.0
	④ 민간 위원 없음	7	3.8
	합계	183	100.0

### 3) 임기 및 연임

고양시의 183개 위원회 중 위원의 임기가 2년인 위원회가 174개(95.1%)로 가장 많으며, 3년인 위원회는 9개(4.9%)로 나타났고, 1년 미만 또는 1년의 임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27] 고양시 위원회의 위원 임기 현황

(단위: 개, %)

구분		위원 임기	
		개수	비율(%)
위원 임기	① 1년 미만	0	0.0
	② 1년	0	0.0
	③ 2년	174	95.1
	④ 3년	9	4.9
	합계	183	100.0

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더불어 연임 규정을 살펴보면, 177개(96.7%) 위원회가 연임이 가능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위원회는 125개(70.6%)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그리고 연임이 불가능한 위원회는 1개이고, 해당 규정이 없는 위원회는 5개로 나타났으며, 연임

횃수에서는 2회가 11개(6.2%), 3회 5개(2.8%)이고, 제한이 없는 위원회와 규정 자체가 없는 위원회가 각각 10개(5.6%), 26개(14.7%)로 확인되었다.

[표 3-28] 고양시 위원회의 위원 연임 규정 현황

(단위: 개, %)

구분			위원 연임 규정	
			개수	비율(%)
연임 및 횃수	연임 규정	① 불가능	1	0.5
		② 가능	177	96.7
		③ 없음	5	2.7
		소계	183	100.0
	연임 횃수	① 1회	125	70.6
		② 2회	11	6.2
		③ 3회	5	2.8
		④ 제한 없음	10	5.6
		④ 규정 없음	26	14.7
	합계		177	100.0

#### 4) 개최 기준 및 실적

고양시에 설치·운영되는 183개 위원회의 회의 개최 기준 규정을 살펴보면, ‘안전 발생 시(수시, 시장·위원장 요청 등)’ 개최가 81개(44.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연 1회’가 29개(15.8%), ‘연 2회’ 28개(15.3%), ‘매월’ 11개(6.0%), ‘4회 6개’(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9] 고양시 위원회의 회의 개최 기준

(단위: 개, %)

구분		회의 개최 기준	
		개수	비율(%)
회의 개최 기준	① 연 4회	6	3.3
	② 연 2회	28	15.3
	③ 연 1회 이상	3	1.6

구분		회의 개최 기준	
		개수	비율(%)
	④ 연 1회	29	15.8
	⑤ 매월	11	6.0
	⑥ 안건 발생 시(수시, 시장·위원장 요청 시 등)	81	44.3
	⑦ 없음	25	13.7
	합계	183	100.0

한편, 2020년과 2021년 183개 각종 위원회의 실제 회의 개최 실적(대면, 서면)을 살펴 보면, 2020년은 ‘1회’ 개최가 39개(21.3%)로 가장 많았고, ‘2회’ 개최가 37개(20.2%), ‘5~10회’ 21개(11.5%), ‘20회 이상’ 10개(5.5%)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55개(3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21년은 ‘1회’ 개최가 48개(26.2%)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2회’ 개최 33개(18.0%), ‘5~10회’ 15개(8.2%), ‘11~20회’와 ‘20회 이상’이 각각 13개(7.1%)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31개(16.9%)로 확인되었다.

[표 3-30] 고양시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2020~2021)

(단위: 개, %, 회)

구분			회의 개최 실적	
			개수	비율(%)
회의 개최 실적	2020년	① 1회	39	21.3
		② 2회	37	20.2
		③ 3회	9	4.9
		④ 4회	4	2.2
		⑤ 5~10회	21	11.5
		⑥ 11~20회	8	4.4
		⑦ 20회 이상	10	5.5
		⑧ 없음	55	30.1
		합계	183	100.0
	최대 회의 개최 위원회	일산서구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52회	
	2021년	① 1회	48	26.2

구분		회의 개최 실적	
		개수	비율(%)
	② 2회	33	18.0
	③ 3회	18	9.8
	④ 4회	12	6.6
	⑤ 5~10회	15	8.2
	⑥ 11~20회	13	7.1
	⑦ 20회 이상	13	7.1
	⑧ 없음	31	16.9
	합계	183	100.0
	최대 회의 개최 위원회	주민참여위원회	85회

## 5) 관련 예산 운영

2020년과 2021년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관련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2020년은 ‘100~500만 원 미만’이 58개(3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500~1,000만 원 미만’ 23개(12.6%), ‘100만 원 미만’ 18개(9.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관련 예산 지출이 없는 위원회는 71개(38.8%)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2021년도 2020년과 마찬가지로 ‘100~500만 원 미만’이 72개(39.3%)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500~1,000만 원 미만’ 28개(15.3%), ‘100만 원 미만’ 27개(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예산 지출이 없는 위원회는 40개(21.9%)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2020년 가장 많은 예산이 지출된 위원회는 ‘도시·건축위원회’로 총 142,560천 원이 활용되었고, 2021년에는 ‘주민참여위원회’로 총 210,954천 원이 운용되었다.

[표 3-31] 고양시 위원회 운영 예산 현황(2020~2021)

(단위: 개, %, 천원)

구분		운영예산	
		개수	비율(%)
예산 운영	2020년	① 100만 원 미만	18 / 9.8
		② 100~500만 원 미만	58 / 31.7



구분		운영예산		
		개수	비율(%)	
		③ 500~1,000만 원 미만	23	12.6
		④ 1,000~2,000만 원 미만	5	2.7
		⑤ 2,000~5,000만 원 미만	5	2.7
		⑥ 5,000만 원 이상	3	1.6
		⑧ 없음	71	38.8
		합계	183	100.0
		최대 예산운영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142,560천 원
	2021년	① 100만 원 미만	27	14.8
		② 100~500만 원 미만	72	39.3
		③ 500~1,000만 원 미만	28	15.3
		④ 1,000~2,000만 원 미만	8	4.4
		⑤ 2,000~5,000만 원 미만	4	2.2
		⑥ 5,000만 원 이상	4	2.2
		⑧ 없음	40	21.9
합계	183	100.0		
최대 예산운영위원회	주민참여위원회	210,954천 원		

## 제4절 소결

지금까지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위원회 현황과 고양시에 설치·운영되는 위원회에 대한 실태를 포괄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살펴본 지방 자치 단체 위원회 현황과 4개 특례시의 연도별 위원회 현황에서 확인하였듯이 고양시에 설치·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의 총량이 상당히 비대하여 이에 대한 조정 및 정비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적정한 규모의 위원회 운영은 정책 결정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수용성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필요 이상의 위원회 설치 남발은 행정력의 낭비와 외부 인적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보편적인 위원회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히 폐지 또는 통합하고,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노력이 지속해서 요구된다.

둘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르면 총괄 부서(주민자치과)는 시에 설치된 위원회 및 위원을 관리해야 하며, 그에 따라 정비 계획 수립과 운영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고양시의 최근 5년간 위원회 총량은 평균 3.8%씩 증가하였으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많고, 행정 수요가 유사한 수원 및 창원과 비교하여도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설치되어, 총괄 부서의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 안전부와 마찬가지로 매년 정비 대상 위원회를 선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상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적 총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법령이 아닌 자치 법규를 통한 위원회 설치 시 적용 요건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 전체 위원회의 증가를 최소화하고, 기존 위원회와의 통합 또는 협업 운영에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득이 위원회를 신설할 때는 존속 기한을 반드시 설정하고, 존속시킬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년도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하거나 이와 같은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될 때 존속 여부를 점검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제 4 장

## 고양시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설문 분석

제1절 조사 설계

제2절 조사 내용의 구성

제3절 설문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 제절 조사 설계

### 1. 분석 목적

앞서 제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고양시에 설치·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구조화된 설문 조사와 전문가 판단 분석을 통해 합리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핵심인 각종 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은 개별 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설문 조사를 통해 향후 고양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비 방향을 설정하는 데 근거 자료로 활용하였다.

### 2. 분석 체계

고양시에 설치된 총 183개 위원회에 대한 운영 실태 및 문제점, 정비 방향에 대한 설문 조사는 개별 위원회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 시기는 2022년 9월 3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였으며, 협조 공문을 통한 의무 참여 방식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시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일반 구청을 구분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고, 구조화된 설문지의 자기 기입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SPSS Statistics 25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더불어 개발·적용된 설문 문항별 특성을 고려하여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을 활용하였다.

[표 4-1] 설문 조사 체계

구분	주요 내용
조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3개 위원회에 대한 실태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li> </ul>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3개 위원회별 담당 공무원</li> <li>- 본청, 작·사업소, 일반 구청</li> </ul>
조사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9월 3일부터 30일까지</li> </ul>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조 공문을 통한 의무 참여 방식 적용</li> </ul>
작성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화된 설문지의 자기 기입 방식</li> </ul>
분석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PSS Statistics 25 패키지 활용</li> <li>- 문항의 특성에 따라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 활용</li> </ul>

## 제2절 조사 내용의 구성

고양시 각종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도출하는 설문 내용은 선행 연구와 「지방자치법」 상 자문 기관의 운영 방법을 토대로 하되, 현행 문제점과 제도적·운영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 통계학적 문항을 제외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 목적 부합성’, ‘각종 위원회 정비 필요성’, ‘자치 법규 근거 설치 위원회 정비 필요성’, ‘개선 방향’ 등으로 주요 요인을 상정하였으며, 총 25개의 요인별 세부 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4-2] 설문 조사 주요 내용

주요 요인	설문 내용	척도
인구 통계학적 문항	성별, 연령, 학력, 소속 기관	명목
	소속 부서, 담당 위원회	개방
각종 위원회 운영 목적 부합성	전문성 확보의 도움 정도	서열 (5점)
	고양시민의 의견 수렴 도움 정도	
	현행 고양시 각종 위원회 운영 목적	
각종 위원회 정비 필요성	법제상 각종 위원회 정비 의무 인식	명목
	고양시의 법제상 정비 의무 이행 필요성	
	현행 고양시 각종 위원회 총량의 적정성	서열 (5점)
	필요성과 효용성이 낮은 위원회 존재	
	폐지가 필요한 위원회 존재	
	통합 운영이 필요한 위원회 존재	
	운영 방법의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 존재	
	담당 위원회의 정비 필요성	명목
담당 위원회의 구체적인 정비 대안		
자치 법규 근거 설치 위원회 정비	법제상 중복 설치 배제 및 통합 운영 인식	명목
	담당 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 존재 인식	

주요 요인	설문 내용	척도
필요성	담당 위원회와 타 위원회의 통합 운영 필요성	
	담당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	
개선 방향	고양시의 위원회 총량제 도입 필요성	
	고양시의 정비 대상 위원회 선정 기준	
	각종 위원회의 민간 위원 관리 DB 필요성	



## 제3절 설문 분석 결과

### 1. 조사 대상

현재 설치·운영되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도출하는 설문 조사는 개별 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71명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훼손되거나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67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인구 통계학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총 67명 중 남성이 28명(41.8%), 여성이 39명(58.2%)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는 9명(13.4%), 30대 28명(41.8%), 40대 26명(38.8%), 50대 4명(6.0%)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졸이 55명(82.1%)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과 대학원 이상이 각각 6명(9.0%)이었고, 소속 기관별로는 시 본청이 44명(65.7%)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농업 기술 센터 8명(11.9%), 일반 구청 및 푸른 도시 사업소가 각각 6명(9.0%), 덕양구 보건소 2명(3.0%), 도로 관리 사업소 1명(1.5%) 등으로 확인되었다.

[표 4-3] 인구 통계학적 분석 결과

(단위: 명, %)

구 분		고양시민	
		빈도	백분율
성별	① 남성	28	41.8
	② 여성	39	58.2
	무응답	0	0.0
	합계	67	100.0
연령	① 20대	9	13.4
	② 30대	28	41.8
	③ 40대	26	38.8
	④ 50대	4	6.0
	무응답	0	0.0
	합계	67	100.0

구 분		고양시민	
		빈도	백분율
학력	① 고졸	6	9.0
	② 대졸	55	82.1
	③ 대학원 이상	6	9.0
	무응답	0	0.0
	합계	67	100.0
소속 기관	① 시분청	44	65.7
	② 일반 구청	6	9.0
	③ 행정복지센터	0	0.0
	④ 덕양구 보건소	2	3.0
	⑤ 일산동구 보건소	0	0.0
	⑥ 일산서구 보건소	0	0.0
	⑦ 농업 기술 센터	8	11.9
	⑧ 푸른 도시 사업소	6	9.0
	⑨ 도서관 센터	0	0.0
	⑩ 상하수도 사업소	0	0.0
	⑪ 도로 관리 사업소	1	1.5
	무응답	0	0.0
	합계	67	100.0

## 2. 설문 분석 결과

### 1) 각종 위원회 운영 목적 부합성

고양시 각종 위원회의 운영 목적에 대한 부합성을 확인하는 질문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운영되는 위원회가 고양시의 주요한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31명(46.3%)으로 가장 많았으며, 긍정적인 응답은 24명(35.9%), 부정적인 응답은 12명(17.9%)으로 나타났다.

[표 4-4] 전문성 확보의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전문성 확보의 도움 정도	
	빈도	백분율
① 전혀 그렇지 않다	2	3.0
② 그렇지 않다	10	14.9
③ 보통이다	31	46.3
④ 그렇다	20	29.9
⑤ 매우 그렇다	4	6.0
무응답	0	0.0
<b>합계</b>	<b>67</b>	<b>100.0</b>

다음으로 현재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가 고양시민의 의견수렴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응답결과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32명(47.8%)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긍정적인 응답은 21명(31.4%), 부정적인 응답은 13명(19.4%)으로 확인되었다.

[표 4-5] 고양시민의 의견 수렴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고양시민의 의견수렴 도움 정도	
	빈도	백분율
① 전혀 그렇지 않다	3	4.5
② 그렇지 않다	10	14.9
③ 보통이다	32	47.8
④ 그렇다	18	26.9
⑤ 매우 그렇다	3	4.5
무응답	1	1.5
<b>합계</b>	<b>67</b>	<b>100.0</b>

마지막으로 고양시 각종 위원회의 운영 목적이 어떠한지에 대한 응답결과, 전문성과 의견수렴 모두라는 응답이 35명(52.2%)으로 과반이 넘었으며, ‘전문성 확보’가 22명(32.8%), ‘주민의 의견수렴’이 10명(14.9%)으로 나타났다.

[표 4-6] 현행 고양시 각종 위원회 운영 목적

(단위: 명, %)

구분	현행 고양시 각종 위원회 운영 목적	
	빈도	백분율
① 전문성 확보	22	32.8
② 주민의 의견수렴	10	14.9
③ 혼합(전문성+의견수렴)	35	52.2
④ 기타	0	0.0
무응답	0	0.0
<b>합계</b>	<b>67</b>	<b>100.0</b>

## 2) 각종 위원회 정비 필요성

고양시 각종 위원회의 정비 필요성을 확인하는 문항은 총 9개이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5항에 따른 자문 기관 정비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의 의회 보고 의무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결과 ‘모른다’는 응답이 56명(83.6%)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알고 있다’는 응답은 11명(16.4%)으로 확인되었다.

[표 4-7] 법제상 각종 위원회 정비 의무 인식

(단위: 명, %)

구분	법제상 각종 위원회 정비 의무 인식	
	빈도	백분율
① 알고 있다	11	16.4
② 모른다	56	83.6
무응답	0	0.0
<b>합계</b>	<b>67</b>	<b>100.0</b>

다음으로 언급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5항에 근거하여 고양시도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고양시의회에 보고가 필요한지에 대한 응답결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가 44명(65.7%)으로 과반이 넘었으며, ‘그렇게 생각한다’가 23명(34.3%)으로 나타났다.

[표 4-8] 고양시의 법제상 정비 의무 이행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고양시의 법제상 정비 의무 이행 필요성	
	빈도	백분율
① 그렇게 생각한다	23	34.3
②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44	65.7
무응답	0	0.0
<b>합계</b>	<b>67</b>	<b>100.0</b>

한편, 2021년 기준 고양시(151개)의 위원회 총량이 수원시(102개)와 창원시(95개), 용인시(155개)와 비교하여 적정한지에 대한 응답결과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30명(44.8%)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29명(43.3%), 적정하다는 응답이 8명(12.0%)으로 확인되었다.

[표 4-9] 현행 고양시 각종 위원회 총량의 적정성

(단위: 명, %)

구분	현행 고양시 각종 위원회 총량의 적정성	
	빈도	백분율
① 전혀 그렇지 않다	5	7.5
② 그렇지 않다	24	35.8
③ 보통이다	30	44.8
④ 그렇다	6	9.0
⑤ 매우 그렇다	2	3.0
무응답	0	0.0
<b>합계</b>	<b>67</b>	<b>100.0</b>

다음으로 현재 운영되는 위원회 중 그 필요성과 효율성이 낮은 위원회가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 긍정적인 응답이 31명(46.3%)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 26명(38.8%), 부정적인 응답이 10명(14.9%)으로 나타났다.

[표 4-10] 필요성과 효용성이 낮은 위원회 존재

(단위: 명, %)

구분	필요성과 효용성이 낮은 위원회 존재	
	빈도	백분율
① 전혀 그렇지 않다	3	4.5
② 그렇지 않다	7	10.4
③ 보통이다	26	38.8
④ 그렇다	26	38.8
⑤ 매우 그렇다	5	7.5
무응답	0.0	0.0
<b>합계</b>	<b>67</b>	<b>100.0</b>

언급한 질문과 함께 폐지가 필요한 위원회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결과 긍정적인 응답과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각각 28명(41.8%)으로 분석되었으며, 부정적인 응답이 11명(16.4%)으로 나타났다.

[표 4-11] 폐지가 필요한 위원회 존재

(단위: 명, %)

구분	폐지가 필요한 위원회 존재	
	빈도	백분율
① 전혀 그렇지 않다	3	4.5
② 그렇지 않다	8	11.9
③ 보통이다	28	41.8
④ 그렇다	24	35.8
⑤ 매우 그렇다	4	6.0
무응답	0	0.0
<b>합계</b>	<b>67</b>	<b>100.0</b>

이어서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중 통합 운영이 필요한 위원회가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 긍정적인 응답이 30명(44.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보통이다’ 27명(40.3%), 부정적인 응답이 9명(13.4%)으로 분석되었다.

[표 4-12] 통합 운영이 필요한 위원회 존재

(단위: 명, %)

구분	통합 운영이 필요한 위원회 존재	
	빈도	백분율
① 전혀 그렇지 않다	2	3.0
② 그렇지 않다	7	10.4
③ 보통이다	27	40.3
④ 그렇다	25	37.3
⑤ 매우 그렇다	5	7.5
무응답	1	1.5
<b>합계</b>	<b>67</b>	<b>100.0</b>

다음으로 개별 위원회의 운영 방법의 정비가 요구되는 위원회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결과 ‘보통이다’가 36명(53.7%)으로 과반이 넘었으며, 긍정적인 응답이 25명(37.4%), 부정적인 응답이 6명(9.0%)으로 분석되었다.

[표 4-13] 운영 방법의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 존재

(단위: 명, %)

구분	운영 방법의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 존재	
	빈도	백분율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	1.5
② 그렇지 않다	5	7.5
③ 보통이다	36	53.7
④ 그렇다	20	29.9
⑤ 매우 그렇다	5	7.5
무응답	0	0.0
<b>합계</b>	<b>67</b>	<b>100.0</b>

그리고 설문 대상자가 담당하는 개별 위원회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결과 ‘필요치 않다’는 응답이 38명(56.7%)으로 과반이 넘었으며, ‘필요하다’는 응답은 27명(40.3%)으로 나타났다.

[표 4-14] 담당 위원회의 정비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담당 위원회의 정비 필요성	
	빈도	백분율
① 필요하다	27	40.3
② 필요치 않다	38	56.7
무응답	2	3.0
<b>합계</b>	<b>67</b>	<b>100.0</b>

앞서 살펴본 질문과 함께 정비가 필요한 개별 위원회의 정비 방법에 대한 질문결과 총 27명 중 ‘다른 위원회와 통합’이 15명(22.4%)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폐지’ 4명(6.0%), ‘운영 성격(심의, 의결, 자문, 의견수렴 등) 변경’이 3명(4.5%)으로 확인되었다.

[표 4-15] 담당 위원회의 구체적인 정비 대안

(단위: 명, %)

구분	담당 위원회의 구체적인 정비 대안	
	빈도	백분율
① 폐지	4	6.0
② 다른 위원회와 통합	15	22.4
③ 소속 조정	1	1.5
④ 직급 조정	0	0.0
⑤ 위원 수 조정	1	1.5
⑥ 위원 구성 방법 변경	1	1.5
⑦ 위원 자격 기준 변경	1	1.5
⑧ 회의 개최 기준 변경	0	0.0
⑨ 연임 규정 변경	0	0.0
⑩ 운영 성격(심의, 의결, 자문, 의견 수렴 등) 변경	3	4.5
⑪ 기타	1	1.5
무응답	40	59.7
<b>합계</b>	<b>67</b>	<b>100.0</b>

### 3) 자치 법규 근거 설치 위원회 정비 필요성

여기에서는 현행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위원회가 아닌, 자치 법규(조례,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위원회에 한정하여 설문을 진행하였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4항에 근거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설치해서는 안 되며, 조례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 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결과 ‘알고 있다’와 ‘모른다’는 응답이 각각 29명(43.3%)으로 나타났다.

[표 4-16] 법제상 중복 설치 배제 및 통합 운영 인식

(단위: 명, %)

구분	법제상 중복 설치 배제 및 통합 운영 인식	
	빈도	백분율
① 알고 있다	29	43.3
② 모른다	29	43.3
무응답	9	13.4
<b>합계</b>	<b>67</b>	<b>100.0</b>

다음으로 설문 응답자가 담당하는 개별 위원회에 한정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6명(68.7%)으로 과반이 넘었고, ‘그렇게 생각한다’가 12명(17.9%)으로 분석되었다.

[표 4-17] 담당 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 존재 인식

(단위: 명, %)

구분	법제상 중복 설치 배제 및 통합 운영 인식	
	빈도	백분율
① 그렇게 생각한다	12	17.9
②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46	68.7
무응답	9	13.4
<b>합계</b>	<b>67</b>	<b>100.0</b>

그리고 앞선 질문과 이어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통합 필요성에 대한 응답결과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29명(43.3%)이었고, ‘필요하다’는 9명(13.4%)으로 분석되었다.

[표 4-18] 담당 위원회와 타 위원회의 통합 운영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담당 위원회와 타 위원회의 통합 운영 필요성	
	빈도	백분율
① 필요하다	9	13.4
② 불필요하다	29	43.3
무응답	29	43.3
<b>합계</b>	<b>67</b>	<b>100.0</b>

마지막으로 현재 담당하는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질문결과 ‘필요하다’가 42명 (62.7%)으로 가장 많았고, ‘불필요하다’ 7명(10.4%)으로 나타났으며, 무응답이 11명 (16.4%)으로 분석되었다.

[표 4-19] 담당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담당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	
	빈도	백분율
① 필요하다	42	62.7
② 불필요하다	7	10.4
무응답	11	16.4
<b>합계</b>	<b>67</b>	<b>100.0</b>

#### 4) 개선 방향

고양시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질문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고양시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총량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결과 ‘모르겠다’는 응답이 30명(44.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필요하다’가 24명(35.8%),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13명(19.4%)으로 확인되었다.

[표 4-20] 고양시의 위원회 총량제 도입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고양시의 위원회 총량제 도입 필요성	
	빈도	백분율
① 필요하다	24	35.8
② 필요치 않다	13	19.4
③ 모르겠다	30	44.8
무응답	0	0.0
<b>합계</b>	<b>67</b>	<b>100.0</b>

다음으로 고양시에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 대상 위원회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인 경우’가 42명(29.0%)으로 가장 많았으며, ‘명확한 존속 사유가 없는 경우’가 37명(25.5%), ‘전년도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한 경우’ 27명(18.6%), ‘위원회 설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0명(13.8%), ‘회의 운영이 비효율적인 경우’ 19명(13.1%)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4-21] 고양시의 정비 대상 위원회 선정 기준(중복 응답)

(단위: 명, %)

구분	고양시의 정비 대상 위원회 선정 기준	
	빈도	백분율
① 전년도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한 경우	27	18.6
②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인 경우	42	29.0
③ 명확한 존속 사유가 없는 경우	37	25.5
④ 위원회 설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0	13.8
⑤ 회의 운영이 비효율적인 경우	19	13.1
⑥ 기타	0	0.0
무응답	0	0.0
<b>합계</b>	<b>145</b>	<b>100.0</b>

마지막으로 개별 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가칭)고양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통합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34명(50.7%)으로 가장 많았고, ‘모르겠다’가 22명(32.8%), ‘필요하지 않다’ 11명(16.4%)으로 분석되었다.

[표 4-22] 각종 위원회의 민간 위원 관리 DB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각종 위원회의 민간 위원 관리 DB 필요성	
	빈도	백분율
① 필요하다	34	50.7
② 필요치 않다	11	16.4
③ 모르겠다	22	32.8
무응답	0	0.0
<b>합계</b>	<b>67</b>	<b>100.0</b>

## 제4절 소결

지금까지 고양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위원회 운영 목적의 부합성, 정비 필요성,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인식을 포괄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확인되었듯이 고양시의 각종 위원회는 상대적으로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보다는 정책 결정에서의 전문성 확보가 주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도움의 정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개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목적이 전문성 확보와 의견 수렴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위원회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개별 위원회별로 핵심 목적을 상정하고 그에 따른 운영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5항에서는 자문 기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한 자문 기관 운영 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회 담당 공무원은 이와 같은 사항을 인식하지 못하며, 법률상 의무 사항인데도 고양시의 이행 필요성이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동 법 제130조 제4항에 따라 유사·중복 자문 기관은 설치할 수 없으며, 조례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 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한 인식 또한 낮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법령의 세부 규정에 대한 낮은 수용성이 고양시의 위원회 총량을 지속해서 증대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법령의 세부 규정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각종 위원회의 총량이 여타 유사한 규모의 지방 자치 단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이에 따라 필요성과 효용성이 낮은 위원회가 존재하고, 위원회의 폐지 또는 통합,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고무적이다. 또한 위원회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며,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존속 사유가 없는 위원회, 전년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 설치 목적이 달성된 위원회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지속해서 증가하는 각종 위원회

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면 상시적인 점검 계획의 수립과 이행이 요구되며, 설치 단계에서 폐지 단계까지 위원회별 생애 주기 관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 제 5 장 결론

제1절 위원회 정비 판단 분석 체계

제2절 판단 분석 결과

제3절 정책 제언





## 제절 위원회 정비 판단 분석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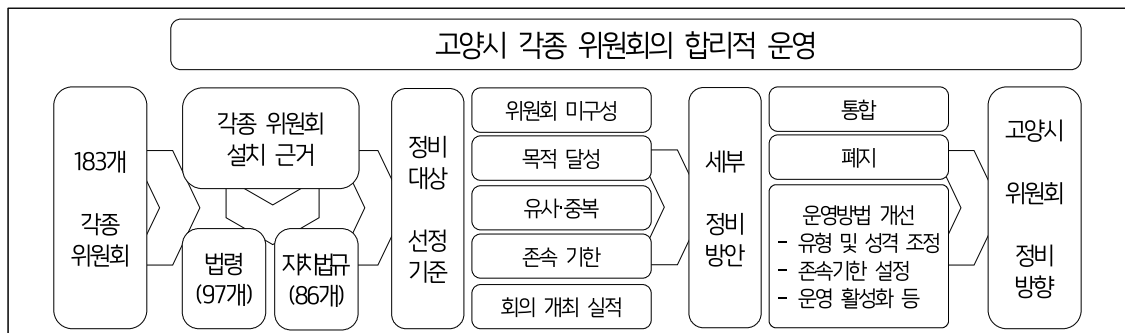
현재 고양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183개 위원회의 정비에 대한 판단 분석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내·외부 판정단에서 개별 위원회의 설치 근거, 운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에 비추어 정비가 요구되는 위원회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정비 방법을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 체계는 아래의 [그림 5-1]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진행 과정 중 조사표 조사를 통한 운영 실태 분석 당시 총 183개의 위원회 중 자치 법규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79개였으나, 2022년 10월 현재 86개로 증가하였고, 이에 고양시의 요청에 따라 86개의 위원회를 판단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총 185개 위원회 중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제외하고 조례 규칙에 근거하여 설치된 86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판단 분석을 진행하였다.

86개 위원회 중 정비 대상 위원회를 선정하는 기준은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보았던 중앙 정부의 위원회 정비 방법을 토대로 하여 ‘위원회 미구성’, ‘목적 달성’, ‘유사·중복’, ‘존속 기한’, ‘회의 개최 실적’을 채택하여 활용하였다.

그리고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는 설치 목적과 운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 폐지, 운영 방법 개선 등의 세부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5-1] 고양시의 각종 위원회 정비 판단 분석 체계



## 제2절 판단 분석 결과

### 1. 정비 대상 위원회 선정

앞서 상정한 위원회의 정비 판단 분석 체계를 근거로 86개의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정비 대상의 선정 기준을 적용한 결과는 아래의 [표 5-1]과 같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총 86개의 위원회 중 설치 근거는 존재하나, 아직 구성되지 않았거나,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새로운 위원의 위촉이 이루어지지 못한 위원회가 5개이며, 자치 법규에 명시된 위원회 구성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위원회는 86개 모두이고, 타 위원회와의 역할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14개, 법률에 따라 존속 기한이 존재하는 위원회는 5개 그리고 2021년 기준 평균 회의 개최 실적은 3.91번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존속 기한은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하여 개별 조항에 명시된 위원회는 전무하며, 5개 위원회 중 3개는 해당 설치 조례의 부칙에 효력의 기간이 한정되어 위원회의 존속 기간 또한 구속력을 갖는 형태이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개별 조례에 조건이 명시된 경우로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역사박물관이 개관하는 날까지 효력이 있으며,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제3조에 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와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의 존속 기간 또한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86개의 위원회를 성격별로 구분하면, 심의가 40개, 의결 17개, 자문 25개, 기타 4개이며, 유형별로는 강행 규정이 60개, 임의 규정이 26개로 나타났고, 분야별로는 ‘산업경제’가 19개로 가장 많으며, ‘보건 복지’ 14개, ‘건설 교통’ 13개, ‘기관 운영’ 11개, ‘농림수산’ 및 ‘환경 관리’가 각각 10개 등으로 확인되었다.

[표 5-1] 지지 법규 설치 근거 위원회의 정비 대상 선정 기준 적용 결과

(단위: 횡수)

연번	분야	위원회 명칭	성격	유형	설치 근거		정비 대상 선정 기준			
					위원회 명칭	지침 법규명	미 구성	목적 달성	유사 중복	존속 기한
1	건설교통	교통유발부담금 감감심의위원회	의결	강행	고양시 교통 유발 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4조	x	x	x	1
2	건설교통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기타	강행	고양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10조	x	x	x	1
3	건설교통	고양시균형발전위원회	심의	강행	고양시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조례	제10조	x	x	x	1
4	건설교통	고양시 대중교통 심의위원회	심의	임의	고양시 대중교통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x	x	x	1
5	건설교통	일산동구 교통유발부담금 감감심의위원회	심의	강행	고양시 교통 유발 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4조	x	○	x	1
6	건설교통	고양시 일산동구 주차차유발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의결	강행	고양시주차차 위반 의견 진술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2조	x	x	x	36
7	건설교통	추진위원회 및 조합사용비용 감증위원회	의결	임의	고양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	제13조	x	○	x	0
8	건설교통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의결	강행	고양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	제7조	x	○	x	4
9	건설교통	고양시 주차장 공유 심의위원회	의결	강행	고양시 주차장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	x	x	x	2
10	건설교통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자문	강행	고양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	○	x	x	0
11	건설교통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강행	고양시 공동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x	○	x	2
12	건설교통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자문	강행	고양시 공동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x	○	x	1
13	건설교통	주차복지위원회	심의	강행	고양시 주거 복지 지원 조례	제8조	x	x	x	2
14	기관운영	고양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	심의	임의	고양시 고양 지원의 지방 법원 승격을 위한 추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x	○	x	0
15	기관운영	고양시 정책연구용역 심의 위원회	심의	강행	고양시 정책 연구 용역 관리 조례	제5조	x	x	x	2
16	기관운영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임의	고양시 포상 조례	제11조	x	x	x	1
17	기관운영	인구정책위원회	자문	임의	고양시 저출산·고령 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	제4조	x	x	x	2
18	기관운영	고양시 소송심의위원회	심의	강행	고양시 소송 사무 처리 규칙	제23조	x	x	x	10
19	기관운영	고양시 신청사 건립기금 심의위원회	의결	강행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x	○	x	4
20	기관운영	시정소속지 편성위원회	심의	강행	고양시 시정 소속지 발행 조례	제6조	x	x	x	12

연번	분야	위원회 명칭	성격	유형	설치 근거		정비 대상 선정 기준			
					위원회 명칭	조항	미 구성	목적 달성	우시 중복	우시 존속
21	기관운영	자치공동체 민들기 위원회	심의	강행	고양시 자치 공동체 민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x		x	3
22	기관운영	주민참여위원회	자문	강행	고양시 주민 참여 조례	제7조		x		85
23	기관운영	고양형혁신교육 운영협의회	심의	강행	고양시 고양형 혁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x		x	2
24	기관운영	고양시 교육발전심의위원회	심의	강행	고양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x		x	2
25	농림수산	고양시 마거리정채지원위원회	자문	임의	고양시 마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9조	x	o	x	2
26	농림수산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공동운영협의회	의결	강행	고양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5조	x		x	6
27	농림수산	고양시동물복지위원회	자문	임의	고양시 동물 복지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5조	x	o	x	2
28	농림수산	고양화훼단지 운영주체 선정위원회	의결	강행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x		x	0
29	농림수산	고양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의결	강행	고양시 농업 산학 협동 심의회 규칙	제3조	x		x	1
30	농림수산	고양시 도시농업위원회	의결	강행	고양시 도시 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x		x	1
31	농림수산	고양시농업품목별 생산조직제 및 농업 전문 경영인 육성기금심의위원회	의결	강행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 조직제 및 농업 전문 경영인 육성 기금 운용 조례	제5조	x		o	1
32	농림수산	농업기계 운영협의회	의결	강행	고양시 농업 기계 운영 및 임대 사업 조례	제9조		x		1
33	농림수산	고양시 특화농산물 육성위원회	심의	임의	고양시 특화 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x	o	1
34	농림수산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기타	강행	고양시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o			0
35	문화예술	고양시 관광진흥위원회	심의	강행	고양시 관광 진흥 조례	제36조		x		0
36	문화예술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자문	강행	고양시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x		4
37	문화예술	도시브랜드위원회	자문	강행	고양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7조		x		4
38	문화예술	고양시정장운동경기부운영위원회	의결	강행	고양시정 장관 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x		5
39	문화예술	고양시 향토문화재 위원회	심의	강행	고양시 향토 문화재 보호 조례	제3조		x		1
40	문화예술	고양시 상징건축물 등 심의위원회	심의	강행	고양시 상징 건축물 등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x		1
41	문화예술	고양시 역사박물관건립 추진위원회	심의	강행	고양시 역사 박물관 건립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조	o			0
42	문화예술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심의위원회	심의	강행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x		2
43	보건복지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강행	고양시 노인 복지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		x		3
44	보건복지	덕양구 장애인농축사육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심의	강행	고양시 장애인 전용 축사 구역 위반 의견 진술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x		45
45	보건복지	고양시 이통금식위원회	심의	강행	고양시 이통 금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x		2

연번	분야	위원회 명칭	성격	유형	설치 근거		정비 대상 선정 기준			
					위원회 명칭	조항	미구성	목적달성	유사 중복	유사 존속
46	보간복지	고양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심의	강행	지역 아동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x	x	x	1
47	보간복지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전문	강행	고양시 아동 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제9조		x	x	1
48	보간복지	고양시 저변청소년육성위원회	심의	강행	고양시 저변 청소년 육성 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		x	x	3
49	보간복지	고양시 성평등위원회	의결	강행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0조		x	x	4
50	보간복지	고양시 여성안전지역연대	기타	강행	고양시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		x	x	2
51	보간복지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전문	강행	고양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제8조		x	x	2
52	보간복지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심의	강행	고양시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x	x	1
53	보간복지	고양시 감염병관리위원회	전문	강행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x	x	0
54	보간복지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심사위원회	의결	강행	고양시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용자금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x	x	1
55	보간복지	고양시 청년정책위원회	심의	강행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		x	x	3
56	보간복지	고양시 인민중진위원회	전문	강행	고양시 인민 중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x	x	5
57	산업경제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심의위원회	심의	임의	고양시 브랜드 관광 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제4조		x	x	1
58	산업경제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사위원회	의결	강행	고양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x	x	3
59	산업경제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심의	임의	고양시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x	x	0
60	산업경제	고양시 기업지원센터위원회	전문	임의	고양시 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		x	x	2
61	산업경제	고양시 투자유치위원회	전문	강행	고양시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3조		x	x	1
62	산업경제	가스공급심의위원회	심의	강행	고양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x	x	2
63	산업경제	고양시 공예산업진흥위원회	심의	임의	고양시 공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1조		x	x	1
64	산업경제	고양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강행	고양시 소비자 기본 조례	제24조		x	x	1
65	산업경제	고양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전문	임의	고양시 공유 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	제22조		x	x	0
66	산업경제	고양시 공정무역위원회	심의	임의	고양시 공정 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x	x	1
67	산업경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심의	임의	고양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x	x	1
68	산업경제	일자리창출위원회	심의	강행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x	x	2
69	산업경제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	강행	고양시 노사 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x	x	1
70	산업경제	고양시 노사민정실무협의회	기타	임의	고양시 노사 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x	x	3

연번	분야	위원회 명칭	성격	유형	설치 근거		정비 대상 선정 기준					
					위원회 명칭	조항	미 구성	목적 달성	우시 중복	유사 중복	유사 중복	기한 실적
71	산업경제	고양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위원회	자문	임의	고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	×	×	×	0	
72	산업경제	김정노동자권리보장 위원회	심의	임의	고양시 가정 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	×	×	×	0	
73	산업경제	고양시 미이스산업 지원위원회	자문	임의	고양시 미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		×	0	
74	산업경제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위원회	자문	임의	고양시 방송 영상 통신 산업 진흥 조례	제19조		×		×	0	
75	산업경제	고양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	강행	고양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	제5조		×		×	6	
76	안전관리	일산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사위원회	심의	임의	고양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의견 진술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		×	17	
77	환경관리	고양시 일신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자문	강행	고양시 일신호수공원 시민 참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		×	2	
78	환경관리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	자문	임의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	○	×	2	
79	환경관리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	자문	강행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13조		×		×	2	
80	환경관리	고양시 자진기어용활성화위원회	심의	강행	고양시 자진기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9조		×		×	1	
81	환경관리	고양시 하천네트워크운영위원회	자문	임의	고양시 하천 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	2	
82	환경관리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	심의	강행	고양시 생태 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	○	×	0	
83	환경관리	고양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자문	임의	고양시 기후 변화 대응 조례	제10조		×	○	×	3	
84	환경관리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운영위원회	자문	임의	고양시 탄소 중립 시민 실천 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	×	1	
85	환경관리	고양시 습지위원회	심의	임의	고양시 습지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	○	×	0	
86	환경관리	고양시 환경교육위원회	자문	강행	고양시 환경 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제6조		×	○	×	1	
<b>합계 평균(심야 40, 의결 17, 자문 25, 기타 4), (강행 60, 임의 26)</b>								<b>5</b>	<b>86</b>	<b>14</b>	<b>5</b>	<b>391</b>

앞서 살펴본 선정 기준에 따라 정비 대상 위원회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5-2]와 같으며,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심의 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28개 위원회가 통폐합, 폐지, 운영 방법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별로 확인하면, 환경정책과가 가장 많은 4개 위원회가 선정되었고, 일자리정책과와 전략산업과, 관광과, 주택과, 농산유통과 등은 각각 2개 위원회가 선정되었다.

[표 5-2] 정비 대상 선정 위원회 현황

연번	담당 부서	위원회 명칭	설치 근거
1	평화미래정책관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심의위원회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기획정책관	인구정책위원회	고양시 저출산고령 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
3	일자리정책과	고양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자문위원회	고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감정노동자관리보장 위원회	고양시 감정 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5	기업지원과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고양시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6	소상공인지원과	고양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	고양시 공유 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
7	전략산업과	고양시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	고양시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8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위원회	고양시 방송 영상 통신 산업 진흥 조례
9	환경정책과	고양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고양시 기후 변화 대응 조례
10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운영위원회	고양시 탄소 중립 시민 실천 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		고양시습지위원회	고양시 습지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2		고양시 환경교육위원회	고양시 환경 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13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	고양시 미세 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14	문화예술과	고양시 역사박물관건립 추진위원회	고양시 역사 박물관 건립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5	관광과	고양시 관광진흥위원회	고양시 관광 진흥 조례
16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심의위원회	고양시 브랜드 관광 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17	주차교통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고양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18	주택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금운용심의위원회	고양시 공동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9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고양시 공동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	도시균형개발과	고양시균형발전위원회	고양시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조례
21	질병관리과	고양시 감염병관리위원회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2	농업정책과	고양화훼단지 운영주체 선정위원회	고양 화훼 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3	농산유통과	고양시 먹거리정책자문위원회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24		고양시동물복지위원회	고양시 동물 복지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
25	도시농업과	고양시 특화농산물 육성위원회	고양시 특화 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6	연구개발과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고양시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27	생태하천과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	고양시 생태 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8	3개 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고양시 교통 유발 부담금에 관한 조례

## 2. 정비 대상 위원회의 판단 분석 결과

정비 대상 위원회에 대한 판단 분석을 앞서 선정된 28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내외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판단 분석은 2단계에 걸쳐서 진행하였으며, 1단계에서는 선정된 28개 위원회에 대한 근거 자치 법규와 설치 목적, 기능 및 역할, 동일 분야 위원회 정보, 운영 실태 등을 토대로 개별 판단을 진행하였고, 2단계에서는 두 차례의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해 28개 위원회에 대한 개별 정비 방안을 도출하였다. 판단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총 28개 위원회 중에서 ‘고양시 기후변화대책위원회’와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고양시 특화농산물 육성위원회’,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는 폐지하고,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심의위원회’를 포함한 13개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운영 방법 개선 부문에서는 유형(강행 또는 임의) 개선이 2개, 성격(심의, 의결, 자문, 평가 등) 개선이 16개, 위원 구성에 대한 개선이 11개, 운영 활성화가 14개 위원회로 판정되었다.

특히, ‘고양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는 현재 미구성 상태이며,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하여 기능 통합이 필요하고,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고양시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폐지와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운영위원회’의 기능 통합이 요구된다.

더불어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일반 구별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 실적과 기능 및 역할, 위원회 운영 목적을 고려하여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표 5-3] 정비 대상 위원회의 판단 분석 결과

연번	담당 부서	위원회 명칭	설치 근거	정비 방법				정비 방향
				폐지	통합	유형 개선	성격 개선	
1	평화미래 정책관	김대중 대통령 시저 기념관 시민위원회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시저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일부 달성</li> <li>• '고양시 상징 건축물 등 심의 위원회'로 통합</li> </ul>
2	기획 정책관	인구정책위원회	고양시 저출산·고령 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 기본 계획과 연동 강화</li> <li>• 연도별 시행 계획 평가 기능 강화</li> <li>• 이행 규정으로 개정</li> </ul>
3	일자리 정책관	고양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자문위원회	고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로 통합</li> <li>•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 확대 및 자문의결 기능 추가</li> </ul>
		감정노동자관리보장 위원회	고양시 감정 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회의 규정 추가</li> <li>• 실무협의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 위촉 확대</li> </ul>
5	기업 지원과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고양시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양시 기업지원자문위원회'로 통합</li> <li>• '고양시 기업지원자문위원회'의 기능 확대 및 심의의결 기능 추가</li> <li>• 정기 회의 규정 추가</li> </ul>
6	소상공인 지원과	고양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	고양시 공유 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로 통합</li> <li>• '공유 경제'는 '사회적 경제' 내에서 함께 구현 필요</li> </ul>
		고양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고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기능 확대 및 자문의결 기능 추가</li> </ul>
7	전략 산업과	고양시 미이스산업 지원위원회	고양시 미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의결·평가 기능 추가</li> <li>• 위원회 기능 강화</li> <li>• 기능 추가에 따른 정기 회의 조정</li> </ul>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위원회	고양시 방송 영상 통신 산업 진흥 조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의결·평가 기능 추가</li> <li>• 위원회 기능 강화</li> </ul>

연번	담당 부서	위원회 명칭	설치 근거	정비 방법				정비 방향
				폐지	통합	유형 개선	성격 개선	
9		고양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고양시 기후 변화 대응 조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 구성 다양화</li> <li>• 정기 회의 규정 추가</li> <li>• 2022년 7월 「고양시 기후 변화 대응 조례」 폐지</li> <li>• 「고양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 제정</li> <li>• 「고양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와 중첩으로 해당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와 중복</li> </ul>
10	환경 정책과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운영위원회	고양시 탄소 중립 시민 실천 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1		고양시습지위원회	고양시 습지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평가 기능 추가</li> <li>• 기능 추가에 따른 정기 회의 조정</li> </ul>
12		고양시 환경교육위원회	고양시 환경 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법률)」로 통합</li> <li>• 의결·자문·평가 기능 추가</li> <li>• 위원 구성 다양화</li> <li>• 정기 회의 규정 추가</li> </ul>
13	기후 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법률)」로 통합</li> <li>• 의결·자문·평가 기능 추가</li> <li>• 위원 구성 다양화</li> <li>• 정기 회의 규정 추가</li> </ul>
14	문화 예술과	고양시 역사박물관간립 추진위원회	고양시 역사 박물관 간립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운영 효율성 낮음</li> <li>• 역사 박물관 건립 이후 운영 관련 위원회 설치 가능</li> <li>• 합리적</li> </ul>
15		고양시 관광진흥위원회	고양시 관광 진흥 조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평가 기능 추가</li> </ul>
16	관광과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심의위원회	고양시 브랜드 관광 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양시 관광진흥위원회」로 통합</li> <li>• 「고양시 관광진흥위원회」 기능 확대 및 위원 다양화</li> </ul>
17	주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고양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의결·평가 기능 추가</li> </ul>

연번	담당 부서	위원회 명칭	설치 근거	정비 방법				정비 방향
				폐지	통합	유형 개선	성격 개선	
	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 확대에 따른 정기 회의 조정</li> <li>• 위원 구성 다양화</li> </ul>
18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고양시 공동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자문·평가 기능 추가</li> <li>• 기능 추가에 따른 정기회의 조정</li> <li>• 위원 구성 다양화</li> </ul>
19	주택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고양시 공동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규정 내 심의와 지원이 별개 위원회로 설치되어 비효율적</li> <li>•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통합</li> <li>• 특별 회계 존속 기한(2023년) 내에만 영 활성화</li> <li>• 의결·평가 기능 추가</li> <li>• 위원 구성 다양화</li> <li>• 기능 추가에 따른 정기 회의 규정 추가</li> </ul>
20	도시군형 개발과	고양시균형발전위원회	고양시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조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행 설치에서 임의 설치로 변경</li> <li>• 의결·평가 기능 추가</li> <li>•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구체적 규 정 추가</li> </ul>
21	질병 관리과	고양시 감염병관리위원회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기능 추가</li> <li>• 위원 구성 다양화</li> </ul>
22	농업 정책과	고양시농업진흥사업추진 위원회	고양 화훼 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규정 내 심의와 지원이 별개 위원회로 설치되어 비효율적</li> <li>• '먹거리위원회'로 통합</li> </ul>
23		고양시 먹거리정책자문위원회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물보호센 터 운영위원회(법률)'로 통합</li> <li>•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 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 규정 추가</li> <li>• 지원 기능 추가</li> </ul>
24	농산 유통과	고양시동물복지위원회	고양시 동물 복지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			●	●	

연번	담당 부서	위원회 명칭	설치 근거	정비 방법					정비 방향	
				폐지	통합	유형 개선	성격 개선	위원 구성		운영 활성화
25	도시 농업과	고양시 특화농산물 육성위원회	고양시 특화 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운영 효율성 낮음</li> <li>• 신규 특화 농산물 개발 및 생산 수요 높음</li> </ul>	
26	연구 개발과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고양시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직영하고 있어 운영 효율성이 낮음에 따라 개별 설치를 임의 설치로 변경</li> </ul>	
27	생태 하천과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	고양시 생태 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운영 효율성 낮음</li> <li>• 기능 중복(소하천관리위원회)으로 폐지</li> </ul>	
28	3개 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고양시 교통 유발 부담금에 관한 조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일반구에 설치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li> </ul>	
<b>합계</b>				<b>4</b>	<b>13</b>	<b>2</b>	<b>16</b>	<b>11</b>	<b>14</b>	-

## 제3절 정책 제언

본 절에서는 앞서 분석한 고양시 각종 위원회에 대한 현황 및 실태 분석과 설문 조사, 판단 분석 등을 토대로 고양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위원회 운영방안은 제도 측면과 운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 측면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담당 부서의 장은 설치 평가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구성 근거,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존속 기한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확인하였듯이 최근 5년간 위원회 총량이 평균 3.8%씩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규정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총괄부서의 역할을 선언적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매년 협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조항의 3항을 개정하여 동 조례 제25조에 따른 자문 위원회의 평가를 받도록 강제해야 한다.

그리고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에는 총괄부서가 고양시에 설치된 모든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도록 규정하며, 정비계획 수립과 운영 활성화, 전문인력 관리 운영 등의 역할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개별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평가 또한 하도록 제도화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5항에 근거하여 매년 이와 같은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규정 신설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른 자문 위원회의 구성은 임의가 아니라 강행 설치로, 자문 위원회의 성격에서도 기존의 검토 외에 심의·의결·평가를 포함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회의 강행 설치에 따라 정기 회의 및 임시 회의 규정의 신설과 위원의 구성 다양화 또한 반영되어야 한다. 더불어

해당 자문 위원회의 심의·의결·평가·검토 보고서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고양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구속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운영 측면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총괄부서의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현행 총괄부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는 기획 및 조정부서가 아닌, 사업부서로 고양시 본청을 비롯한 모든 행정기관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 자치 단체의 위원회 역할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전문성 제공과 시민의 의견 반영임을 고려하면, 특정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부서보다는 총괄 측면에서 고양시 전체의 정책을 기획·조정하는 부서가 위원회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고양시 위원회의 지속적인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적 총량 설정이 필요하다. 앞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고양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상당히 많은 수준이며, 이로 인해 총괄부서의 관리 부진과 유사·중복 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정력 낭비, 민간위원 확보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고양시의 현행 행정수요 및 행정역량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가능한 위원회 총량을 총괄부서 차원에서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별 위원회 담당 부서에서 관리되는 민간 위원에 대한 정보를 총괄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가칭)고양 인재 풀’ 또는 ‘(가칭)고양 인재 DB’를 구축하고 시스템화하여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위원을 배치하고, 위원회와 위원의 특성에 따라 이해충돌 및 제척(除斥) 방지, 신설 위원회의 적시 구성, 임기 종료 등에 따른 공석에 위원 공급, 특정 위원의 다수 위원회 활동 관리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국내문헌]

- 권용수·박계관·김승언.(2007). “정부위원회의 조직개편방안.” 국회입법조사처  
민진.(2014). 「조직관리론」. 서울: 대영문화사.
- 박준호·강진철·최진욱·박상복.(2020). “부산시 위원회 제도 혁신방안 연구.”  
사회문화발전연구원.
- 유민봉(2015). 「한국행정학」. 서울: 박영사.
- 이종수, 전주상, 김철.(2003).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 이창원·최창현·최천근.(2018). 「새 조직론」. 서울: 대영문화사.
- 전영평·장임숙. (2005). “지방정부위원회 운영의 비판적 고찰: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7(1).

### [해외 문헌]

- Buchanan, J. M. and Tullock, G. (1962). The Calculus of Consent: Logical  
Foundation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Ann Arbor:University  
of Michigan.
- Etzioni, A. (1964). Modern Organization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 Griffin, R. W. & Moorhead, G. (2007). Organizational behavior. Boston, MA:  
Houghton Mifflin Company.
- Hayes Jr, V. R. (2000). Trying to obey the law: The 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 the Courts, and the common sense initiative.  
Administration & Society, 32(2), 183-218.

- Johns, G. (2007). *Organizational Theory, Design and Change*. New Jersey: Parsons Education.
- Katz, D. & Kahn, L.(1966). *The Social Psychology of Organizations*. New York: Wiley.
- Koontz, H., O'Donnell, C., & Weihrich, H. (1984). *Management*. New York: McGraw-Hill.
- Parsons, Talcott(1960). *Structure and Process in Modern Societies*. Glencoe, IL: The Free Press.
- Selznick, P. (1953). *TVA and the grass roots: A study in the sociology of formal organization (Vol. 3)*.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eber, Max. (1947).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New York, NY: The Free Press.



## 부록

### 고양시 각종 위원회 정비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정연구원은 고양시 산하 기관으로 시정의 전반적인 정책 발굴 및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자 연구합니다. 고양시에 설치·운영되는 각종 위원회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행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본 설문 조사를 진행합니다.

본 조사는 현행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견해를 알아보는 설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 내용을 꼼꼼히 읽어 주시고 평소의 생각과 느낌을 가감 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설문 대상자: 고양시 각종 위원회 운영 담당 공무원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조사 관련 문의]

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전성훈 연구위원(031-8073-8355),  
이보라 연구원(031-8073-8416)





	○
3)-4	<p>귀하가 담당하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① 필요하다[3)-5 이동]                      ② 필요하지 않다[4)-1 이동]</p>
3)-5	<p>귀하가 생각하는 위원회의 준비는 다음 중 어떠한 것입니까?</p> <p>① 폐지 ② 다른 위원회와 통합 ③ 소속 조정 ④ 직급 조정                  ⑤ 위원 수 조정 ⑥ 위원 구성 방법 변경 ⑦ 위원 자격 기준 변경                  ⑧ 회의 개최 기준 변경 ⑨ 연임 규정 변경 ⑩ 운영 성격(심의, 의결, 자문, 의견 수렴 등) 변경 ⑪ 기타</p>
	<p>[기타 응답]</p> <p>○</p> <p>○</p>

<p><b>▣ 담당 위원회가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이 아닌 자치 법규(조례, 규칙)에 근거하여 설치된 경우에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p>		응답란
4)-1	<p>『지방 자치법』 제130조 제4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성격과 기능이 다른 위원회와 중복될 때 설치하여서는 안 되며, 조례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 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p> <p>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p>	
4)-2	<p>귀하가 담당하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p>① 그렇게 생각한다[4)-3이동]    ②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4)-4 이동]</p>	
4)-3	<p>귀하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본인이 담당하는 위원회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해당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입니까?</p> <p>① 필요하다                                      ② 불필요하다</p>	
	<p>통합 대상 위원회의 명칭을 적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4)-4	<p>귀하가 담당하는 위원회의 목적과 회의 개최 실적, 운영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모르겠다</p>	

▣ 다음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란
5)-1	<p>귀하는 고양시가 위원회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① 필요하다      ② 필요치 않다      ③ 모르겠다</p>	
5)-2	<p>귀하는 정비 대상 위원회를 선정할 때, 다음 중 어떠한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중복 응답 가능)</p> <p>① 전년도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한 경우    ② 유사 성격 및 기능을 가진 위원회인 경우    ③ 명확한 존속 사유가 없는 경우    ④ 위원회 설치 목적이 달성된 경우    ⑤ 회의 운영이 비효율적인 경우    ⑥ 기타</p>	, , ,
	<p>[기타 응답]</p> <p>○</p> <p>○</p>	
5)-3	<p>귀하는 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가칭)고양시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통합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모르겠다</p>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reasonable management of various committees in Goyang City

Sunghun Jeon<sup>3)</sup>, Bora Lee<sup>4)</sup>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problems and present maintenance standards through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committee in Goyang City.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binding power of the 「Goyang City ordinance o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various committees」. Specifically, the role of the management department should be amended into mandatory regulations and the results of the consultations should be reported annually to the Goyang City council.

Seco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0(5) of the 「Local Autonomy Act」, the regulations should be amended to report the maintenance plan and results to the Goyang City council every year.

Third, an ‘Advisory Committee’ according to Article 25 of the 「Goyang City ordinance o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various committees」 should be established mandatory and its role should be expanded to deliberation, resolution, and evaluation.

Fourth, the committee management department should be changed from the existing department to the planning and coordination department.

Fifth, it is necessary to set and manage the total amount of the committee at the management department level, considering the administrative demand and capacity of Goyang City.

Finally, it is necessary to secure efficiency in committee operation by establishing and systematizing the Goyang talent pool or Goyang talent data base.

---

3) Goyang Research Institute, Goyang, Korea

4) Goyang Research Institute, Goyang, Korea